

정신건강 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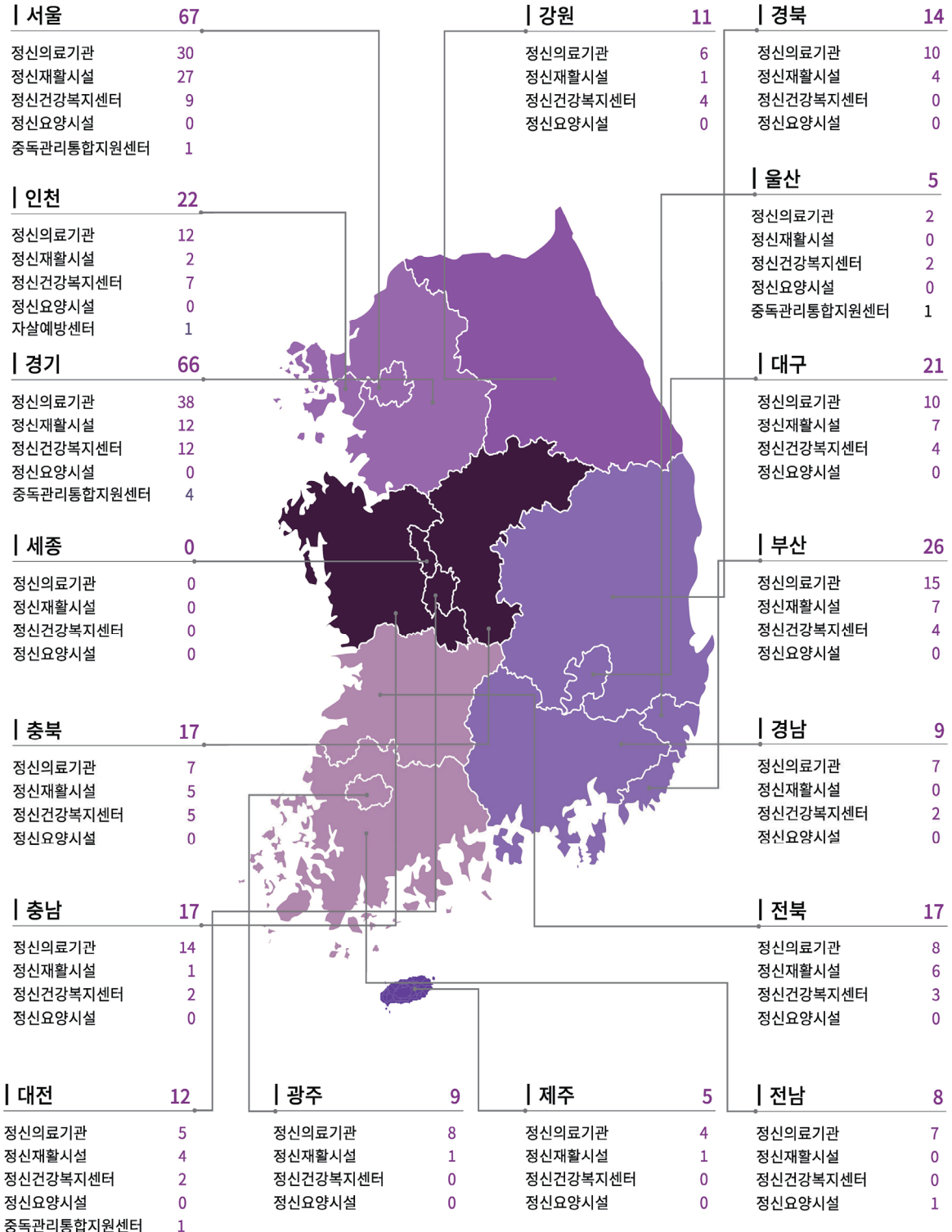
2026. 1.



2026년 보건복지부 지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

전국 326

정신의료기관 183 정신재활시설 78 정신건강복지센터 56 정신요양시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 자살예방센터 1



목 차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1
1.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2.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개요	3
3.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5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9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연간 일정표	10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11
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운영계획 보고 및 선발	17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모집보고	19
5.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운영	21
6.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보고	26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49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50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57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69
1. 법적 근거	70
2. 보수교육 대상자	71
3.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73
4.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 제출	75
5. 보수교육 운영 및 실시	76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79

-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0
- 2.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관련 법률 81
- 3.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관련 고시 99

수련과정 참고자료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세부 교육내용 27
-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중도포기 사유서 36
- 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계약서 37
- 4. 대학·대학원의 임상심리 관련 인정과목 39
- 5. 실습평가서 44
- 6. 실습확인서 48

부록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목록 112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주요 개정 사항

구분	2025년	2026년(개정)	개정사유	페이지
도입배경 및 필요성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도입 및 운영 〈신설〉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도입 및 운영 ○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정기평가 도입(시행 2026.1.1.)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시행 '26.1.1.) 사항 반영	2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 개요	가.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18조	가.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시행 '26.1.1.) 사항 반영	3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다.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주요내용 표〈생략〉	다.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주요내용 표〈본문참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메뉴명 및 순서 변경	6-7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 연간 일정표	표〈생략〉 〈신설〉	표〈현행과 같음〉 * 지도전문요원 교육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 일정 변경 가능성 안내	10
정신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가.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중략〉 -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 전공의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의 100분의 100이상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경우) 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상시 근무	가.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현행과 같음〉 -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 전공의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경우) 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상시 근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시행 '26.1.1.) 사항 반영 *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기관평가, 지정취소 등 신설	11

구분	2025년	2026년(개정)	개정사유	페이지
	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 상시 근무. 다만,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위촉 - <신설>	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 상시 근무. 다만,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위촉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마. 수련기관 보관서류 등 <신설> ○ 제출서류 ① ~ ⑤ <생략> ⑥ <신설>	마. 수련기관 보관서류 등 ○ 수련일지, 실습(사례)보고서는 <u>관련 학·협회의 수련지침서 활용 가능함</u> ○ 제출서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평가지표별 서면심사 증빙자료</u>	참고·활용가능한 지침서 및 신규 지정 및 정원 조정제출서류 안내	14~15
정신전문 요원 수련 기관 지정	<신설>	<u>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취소 기준</u>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u> - <u>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 - <u>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u>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u>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u> - <u>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 <u>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시행 '26.1.1.) 사항 반영 * 수련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추가	16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 운영계획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선발 <중략>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정신건강전문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선발 <현행과 같음> ○ 수련기관에서는 수련생 모집 시 자격 요건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수련생 모집 시 적용되는 자격 기준 준수하도록 안내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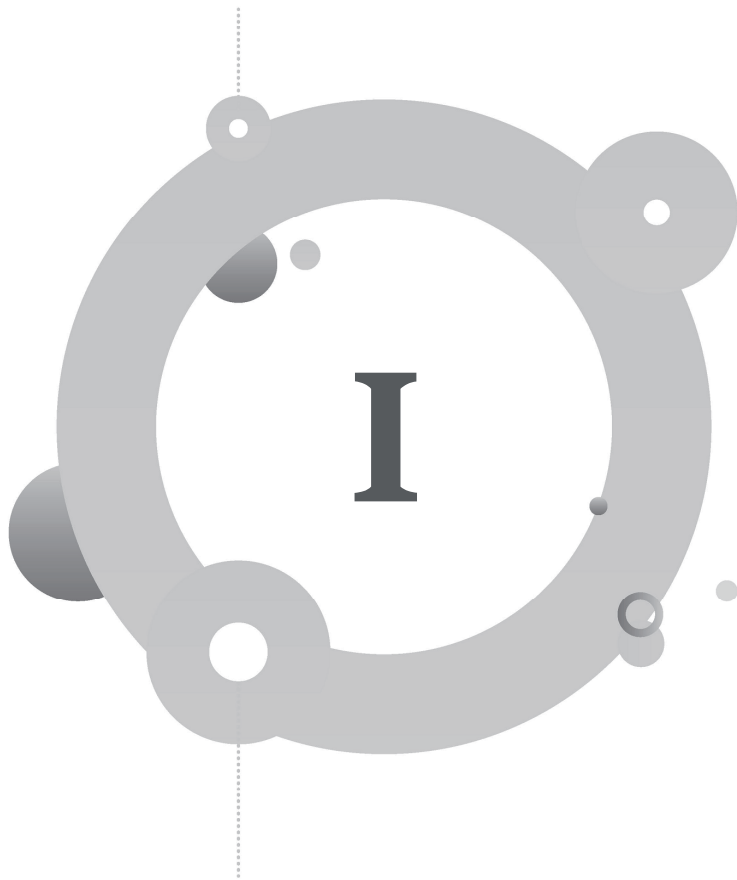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6년(개정)	개정사유	페이지
보고 및 선발	요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략〉 * 수련 모집보고(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시, 국가 면허·자격번호(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1급, 2급)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수련이 인정되지 않음	령」 제1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현행과 같음〉 * 수련 개시 당시 국가 면허·자격번호(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1급, 2급)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수련이 인정되지 않음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과정 운영	나. 수련기관 유의사항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이 수련과 근로를 병행할 경우, 수련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수련계약서를 근거로 이론과 실습교육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함. 〈신설〉 〈신설〉 〈중략〉 〈신설〉	나. 수련기관 유의사항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이 수련과 근로를 병행할 경우, 수련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수련계약서를 근거로 이론과 실습교육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u>휴게시간</u>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함. ○ 수련 시, <u>연장수련을 권고하지 않음.</u>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생의 동의 하에 지도전문요원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연장수련시간을 정하여 진행되도록 함. * 개인과제, 개인용무에 대한 사항은 연장수련에 포함되지 않음.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이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함. 〈현행과 같음〉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및 준수하여야 함.	수련생의 연장수련,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안전 및 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21-22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과정 운영	〈신설〉	다. 수련생 유의사항 ○ 수련생은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련생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	수련생 복무, 안전 및 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22

구분	2025년	2026년(개정)	개정사유	페이지
		<u>한 사유로 결근,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련기관의 장 또는 지도전문요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u> ○ 수련생은 수련 중 또는 수련 후 본인이 수련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 ○ 수련생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련기관의 장이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수련기관 변경 및 수련휴식 ○ 수련휴식이 가능한 경우 - 수련생이 불의의 사고, 질병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라. 수련기관 변경 및 수련휴식 ○ 수련휴식이 가능한 경우 - 수련생이 불의의 사고, 질병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정신건강복지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시, 수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결격사유 시 수련계약 처리 기준을 안내	2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바. 외국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 ○ 제출자료 - 외국학교 또는 수련기관(교육기관) 교육·수련과정 졸업·이수 증명서* 원본, 외국 유사 자격·면허증 원본, 외국자격증 관련 법령 및 규정(정신건강 업무가 포함된 내용)의 자료 및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아포스티유 각 1부 〈중략〉 -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면허증 사본 1부*등**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의 기본 요건이 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사본 ** 외국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추가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신설〉	바. 외국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 ○ 제출자료 - 외국학교 또는 수련 기관(교육기관) 교육·수련과정 졸업·이수 증명서* 원본, 수련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외국 유사 자격·면허증 원본(최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확인되는 최신본 제출), 외국자격증 관련 법령 및 규정(정신건강 업무가 포함된 내용)의 자료 및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아포스티유 각 1부 〈현행과 같음〉 - 국내 자격 취득의 기본 요건이 되는 자격(면허)증 1부 - 〈삭제〉 - 〈삭제〉 - 기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경력 증명서 등)	자격증 심사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	52-53

구분	2025년	2026년(개정)	개정사유	페이지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기준	외국자격 인정 요청서 〈생략〉	외국자격 인정 요청서 〈본문참조〉	자격증 심사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 반영	54-55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나. 신규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5. 학위증명서	나. 신규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5.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자격증 심사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	57
	마. 자격증 승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년 정신건강 업무 증빙, 필요시 업무분장표 제출) 〈신설〉 6. 업무분장	마. 자격증 승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년 정신건강 업무 증빙, 필요시 업무분장표 제출) 1) 주근무시간 2) 휴직 기간 또는 휴직여부 3) 업무내용 → 1), 2), 3)의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 로 제출 6. 업무분장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 체 중 해당기관에 한함)	자격증 심사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	59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3. 트라우마센터 9.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위기대응상 담팀, 업무분장표 제출) 21.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 24. 서울심리지원센터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3. 트라우마센터 - 트라우마센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9. 보건복지부상담센터(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업무분장표 제출)) 21. <u>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 팀 및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u> (업무 분장표 제출) * (17개소)충양, 부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제주(구, 마약퇴 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 24. <u>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u> (업무분장표 제출) (구, 서울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전문요 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실 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지정	62
	※ 관련 FAQ ◦ 업무분장표는 모든 사람이 제출하여 야 하나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 실무경력 심 사 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만으 로 정신건강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 업무분장표를 제출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FAQ ◦ 업무분장표는 모든 사람이 제출하여 야 하나요?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 실무경력 심 사 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만으 로 정신건강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 기 어려운 경우 업무분장표를 제출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u>제출대상은 실 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중 해당되 는 기관입니다.</u>	자격증 심사 업 무 처리 절차 현 행화	64

구분	2025년	2026년(개정)	개정사유	페이지														
보수교육 대상자	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자 ○ 유예대상자 <table><tr><th>유예 대상자</th><th>증명서류</th></tr><tr><td>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td><td rowspan="3">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병역확인서류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등 (휴직사유, 6개월 이상 휴직기간 명시)</td></tr><tr><td>2. 육아, 가사, 유학, 군복무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td></tr><tr><td>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td></tr></table>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해당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유예 신청 ※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기간 인정	유예 대상자	증명서류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병역확인서류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등 (휴직사유, 6개월 이상 휴직기간 명시)	2. 육아, 가사, 유학, 군복무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자 ○ 유예대상자 <table><tr><th>유예 대상자</th><th>증명서류</th></tr><tr><td>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td><td>진단서 또는 기관 내부 증명서</td></tr><tr><td>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td><td>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고용 24) 발급) 중 1부(기관장인 필수)), 병역확인서류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등 (휴직사유와 기간 명시)</td></tr><tr><td>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td><td></td></tr></table>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해당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유예 신청 ※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기간 인정	유예 대상자	증명서류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진단서 또는 기관 내부 증명서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고용 24) 발급) 중 1부(기관장인 필수)), 병역확인서류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등 (휴직사유와 기간 명시)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용어 수정 및 증명서류 추가	71
	유예 대상자	증명서류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병역확인서류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등 (휴직사유, 6개월 이상 휴직기간 명시)																	
2. 육아, 가사, 유학, 군복무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유예 대상자	증명서류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진단서 또는 기관 내부 증명서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고용 24) 발급) 중 1부(기관장인 필수)), 병역확인서류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등 (휴직사유와 기간 명시)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중략〉 〈신설〉	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현행과 같음〉 ○ 처리절차 표 〈본문 참조〉	면제·유예 처리 절차 표 추가	72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위탁기관 선정 표제목〈신설〉 표〈생략〉 〈신설〉 ○ 위탁기간 : 2023. 2. 23. ~ 2025. 12. 31.	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위탁기관 선정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표〈현행과 같음〉 - 2026년도 위탁기관은 보건복지부 공모 후 확정될 예정(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공시사항 → 공고) ○ 위탁기간: 위탁기관 선정된 후 3년	기존 위탁기관 및 위탁기간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6년도 공모 예정 상태 반영	74														
보수교육 운영 및 실시	가. 보수교육 방법 및 비용 ○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시간 당 8천원 이내 〈신설〉	가. 보수교육 방법 및 비용 ○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시간 당 8천원 이내 ※ 2026년도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보건복지부 공모 후 확정될 예정	76														
정신건강 전문요원 제도 관련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0.22.] [법률 제 20511호, 2024.10.22. 타법개정] 제17조 〈일부개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신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법률 제 20820호, 2025.3. 18. 일부개정] 〈본문참조〉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시행 '26.1.1.) 사항 반영	81-8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2022. 4. 5.〉 1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정 2025. 6. 20.〉 1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중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타법 개정(시행 '25.6. 21.) 사항 반영	86-87														

구분	2025년	2026년(개정)	개정사유	페이지
	「의료법」, 같은 표 2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및 제2호 중 「의료법」	「간호법」, 같은 표 2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및 제2호 중 「간호법」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기관 목록	(2025.1.기준) 표<생략>	(2026.1.기준) 표<본문 참조>	2026년 기준 수 련기관 목록 현 행화	112- 123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의 이해

-
1. 도입배경 및 필요성
 2.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개요
 3.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1

도입배경 및 필요성

가 |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도입 및 운영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시행 1996.12.31.)
 -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시행 2017.5.30.)
 -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정신보건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정신보건전문요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 변경
- 2018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도입
-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정기평가 도입(시행 2026.1.1.)

나 |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 증가로 정신건강 환경 및 정책 변화

-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 필요
 - '22년 4월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도록 작업치료사 분야 추가(시행 2022.4.8.)
-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위해 신규·교환 수련기관 확대 필요
 - '24년 8월 수련기관 유형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추가(시행 2024.8.19.)

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시행

- 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요원의 역량강화 및 보수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
- 급변하는 정신건강 환경과 미래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기대

가 |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8호)

나 | 주요 내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
 -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시행 2022.4.8.)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수련기관으로 지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제출
 -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8호 제11조에 따라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할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운영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할 수 있음.

가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운영

- 효율적인 전문요원 제도운동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8호)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업무, 자격증 신청, 보수교육 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 정신건강전문요원 장기적 수급 정책의 기반 구축
 -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전문인력 수급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지역별, 직역별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계획 지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신속한 업무처리
 - 전문요원 수련 과정 보고 및 자격증 신청 등 기존 수기로 하던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이용자 편의와 업무 효율 증대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신청 및 효율적 이수 관리
 - 자격증 심사 및 발급 업무 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소

나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 인터넷 포털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검색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홈페이지(www.ncmh.go.kr)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아이콘을 클릭하여 관리 시스템 접속
- 주소창에 <https://www.ncmh.go.kr:2450> 입력
 -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접속 시 브라우저(Browser)는 크롬, 네이버웨일 등 이용을 권장

다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주요내용

구분	카테고리		세부 내용
수련 교육*	수련 기관	수련과정 정보	수련과정 정보 입력, 수정 및 조회
		수련기관 신규 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수련기관 신규 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수련 교육	수련운영계획	수련운영계획 입력, 수정 및 조회
		수련생 모집보고	수련생 모집보고 및 관리
		지도전문요원 보고	지도전문요원 보고 및 관리
		수련생 수료보고	수련생 수료보고 및 관리
		수련생 중도포기	수련 중도포기 등록 및 중도포기 사유서 업로드
	수련생모집안내		수련기관별 수련생 모집 공고 안내
	수련자료실		수련과정 운영 관련 자료 제공
보수 교육	보수교육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기관 조회
	보수교육 신청일정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일정 안내 및 신청
	보수교육 면제/유예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 확인서 출력
	나의 보수 교육	보수교육 신청내역	보수교육 신청내역 확인
		온라인(동영상) 강의실	온라인(동영상) 보수교육 신청내역 확인 및 교육 수강
자격증 발급 신청	보수교육 이수내역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및 이수증 출력
	자격증 발급 안내		신규, 승급, 재발급 절차 안내
	신규자격증		수련을 종료한 수련생 개인이 정보를 입력하여 신규자격증 신청
	자격증승급		2급 자격증 취득자가 1급 승급 자격증 신청
알림 마당	자격증재발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 사이트 연결
	공지사항		수련, 보수교육, 시스템 이용 등 공지내용 게재
	구인/구직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공고 등록 및 조회
	FAQ/Q&A		자주하는 질문 조회, 공개/비공개 문의
	자유게시판		회원 자유 게시글 작성 및 조회, 댓글 작성
내 페이지	일정관리		수련운영계획 등록 일정 조회
	회원정보변경		이메일, 휴대전화, 근무기관 등 회원정보 변경
	비밀번호변경		회원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회원 탈퇴
관리자 권한 신청/말소		수련기관관리자/보수교육관리자 권한 부여/말소 신청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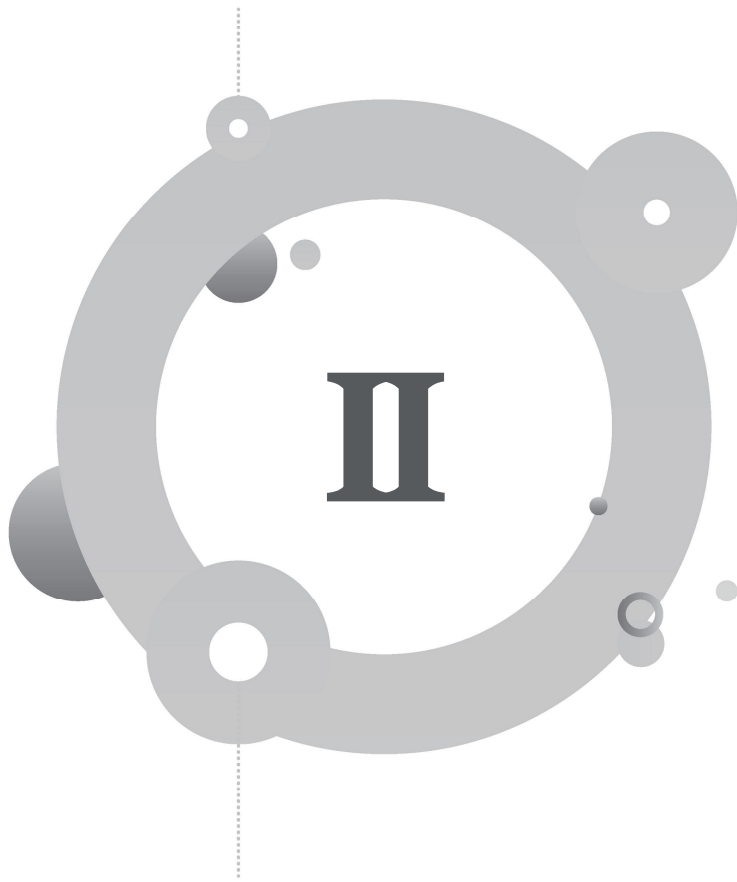
구분	카테고리	
수련 교육	수련기관 관리	수련기관 정보
		수련 운영계획
		수련기관 신규 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수련생 모집보고	수련생 모집보고
		지도전문요원 보고
	수련생 수료보고	
	수련생 중도포기	
	수련자료실	
	수련생 모집안내	

⇒

변경 후

구분	카테고리	
수련 교육	수련기관	수련과정 정보
		수련기관 신규 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수련교육	수련운영계획
		수련생 모집보고
		지도전문요원 보고
		수련생 수료보고
		수련생 중도포기
		수련생 모집안내
	수련자료실	

- 혼동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메뉴명을 명확하게 바꿔 이용자 직관성 제고
 - (기존) 수련기관 정보 → (변경) 수련과정 정보
 - * 각 수련과정의 관리자가 과정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조정
- 사용자 편의성과 직관성 향상을 위해 기능별·업무 흐름에 따른 메뉴 재구성
 - 수련교육 하위 메뉴에 ‘운영계획 → 모집보고 → 지도전문요원 보고 → 수료보고 → 중도포기’의 업무 진행 순서를 반영하여 메뉴를 재배치함으로써, 담당자가 실제 업무순서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연간 일정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3.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운영계획 보고 및 선발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모집보고
 5.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운영
 6.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보고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연간 일정표

구 분	일 정	내 용
수련운영계획	12월~익년1월	• (관련근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등록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수련교육 • (등록사항) 운영인원, 이론·실습·교환수련 교육계획 등
지도전문요원 보고	2월	• (등록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수련교육 • (등록사항)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지도전문요원 교육	2월	• (신청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보수교육 • (주요내용) 전문요원제도, 관련 법령, 지침 등 안내
수련생 수료보고	2월	• (관련근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등록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수련교육 • (등록사항) 이론·실습·교환수련 이수시간, 학습평가 점수, 실습확인서 등
수련생 모집보고	3월	• (관련근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등록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수련교육 • (등록사항) 수련생 일반사항,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지도전문요원 교육 (신규지정 예정기관 포함)	7월	• (신청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보수교육 • (주요내용) 전문요원제도, 관련 법령, 지침 등 안내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심사	8월~11월	• (관련근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 (신청방법)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 수련교육 • (신청사항) 지정신청서, 개설허가증·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전공의수련병원지정서(택1), 수련계획서 등 • (심사절차) 1차 서면심사 → 2차 현장심사
기타사항	상시	• 수련생 중도포기, 수련휴식, 지도전문요원 변경,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 지도전문요원 교육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 (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제2024-238호)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제3조(수련기관 지정)

-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 전공의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의 100분의 10이상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경우)
 - 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상시 근무
 - 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 상시 근무. 다만,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위촉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나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기준

- 국립(국립정신건강센터 포함)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
 -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인 이상 상근
-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인 이상 상근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지정 조건이 되는 정신의료기관(위의 두 항목에 해당하는 정신의료기관 외의 입원실의 100분의 100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
 -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인 이상 상근

-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하고,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인 이상이 상근
- * 1명의 지도전문요원은 2개 기관 이상 동시 위촉 불가(1인은 1개 기관만 위촉 가능, 이미 수련기관에 상근하며 수련지도를 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타 수련 기관에 위촉 불가능)

다 | 수련기관 지정신청 서류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수련기관 지정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서
 -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 신청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지도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신청기관에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지도전문요원의 위촉증명서류 및 그 사람의 자격증 사본
- 상기 신청서류를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수련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서 변경
- * 매년 다음연도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 접수(홈페이지 공지)

라 | 수련기관 지정 심사

- 수련기관 심사유형은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와 2차 현장심사(정량·정성평가)로 구분되며, 심사영역은 아래와 같이 6개의 영역으로 구성
 -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수련 교육과정의 적절성, 수련 학습자원의 적절성, 지도전문요원의 전문성,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수련성과의 충분성(정원조정 신청기관만 해당)
- 신청은 신규지정과 정원조정으로 구분되며, 심사기준 및 항목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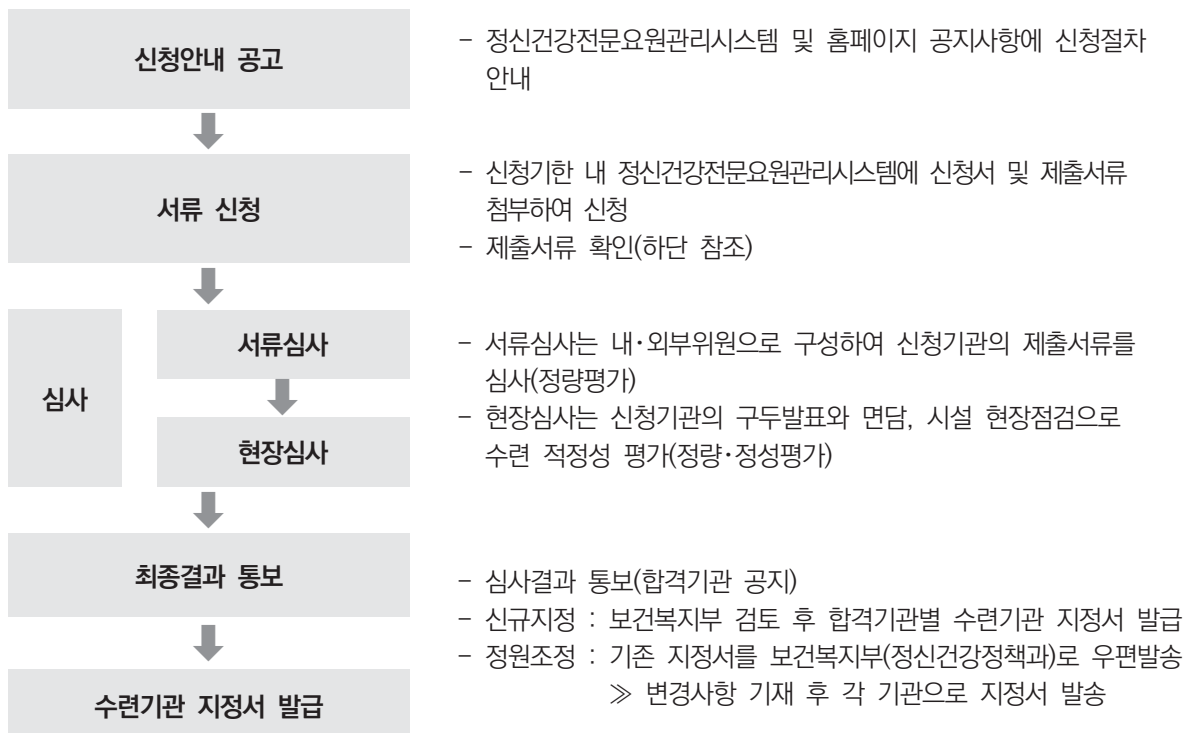
서류심사 (신규·정원기관)	〈신규지정 신청기관〉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항목별	수련기관의 특성, 직원 현황, 이용자 규모 등
	수련 교육 과정의 적절성		수련계획서, 모집선발, OT진행,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환수련, 수련지도, 수련평가 계획 등
	수련 학습 자원의 적절성	충족	시설 및 공간, 전산화 장비, 수련교재 및 수련도구 구비여부 등
	지도전문요원의 전문성	미충족	지도전문요원 현황 및 자격, 개인 역량강화 등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수련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수련지침, 수련생 대상 인권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계획, 고충처리절차 마련 등
	〈정원조정 신청기관〉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항목별	수련기관의 특성, 직원 현황, 이용자 규모 등
	수련 교육 과정의 적절성		수련계획서, 모집선발, OT진행,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환수련, 수련지도, 수련평가 계획 및 수행여부 등
	수련 학습 자원의 적절성	충족	시설 및 공간, 전산화 장비, 수련교재 및 수련도구 구비여부 등
	지도전문요원의 전문성	미충족	지도전문요원 현황 및 자격, 개인 역량강화 등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수련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수련지침, 수련생 대상 인권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계획, 고충처리절차 마련 등
현장심사 (신규·정원기관)	수련 성과의 충분성		수련만족도 평가 실시 여부, 수료보고 수련생 비율
	〈서류심사 합격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신청기관〉 ■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현장 확인 ■ 서류심사에서 보완 요청된 사항에 대한 내용 확인 ■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수련책임자의 운영 의지, 사례의 충분성) ■ 수련 교육과정의 적절성, 공간 및 학습자원의 적절성 확인 ■ 지도전문요원의 전문성(수련제도 이해, 개인역량강화 노력)		

마 | 수련기관 보관서류 등

- 수련기관은 수련과 관련된 다음 서류 등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
 - 수련생 모집보고 관련 서류(모집공고, 서류·면접심사 관련 서류 등)

- 수련 내부 지침 또는 수련 매뉴얼
 - 수련계획서(연간·월별 계획 포함)
 - 수련생 수련일지(실습, 교환수련 일지) 및 지도전문요원 감독기록지
 - 수련생 교환 실습관련 서류(협약서, 실습확인서, 공문, 수련계획 등)
 - 학습평가 관련 서류
 - * 위탁평가 시 의뢰공문, 확인증 등
 - ** 자체평가 시 시행공문, 결과, 문제 출제관련 증빙 서류(위원회) 등
 - 실습평가 관련 서류(실습(사례)보고서, 기관별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
 - 이론교육 증빙자료(확인증, 공문, 일정표, 출석확인, 강사목록 등)
 - 수련계약서, 근로계약서(수련과 근무를 병행할 경우)
 - 수련생 출퇴근 기록부
- 수련기관은 행정기관의 수련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시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응하여야 함.
- 수련일지, 실습(사례)보고서는 관련 학·협회의 수련지침서 활용 가능함.

Ⅰ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승인 절차 Ⅰ



○ 제출서류

- ① 수련기관 지정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정원조정 신청서
- ②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기관) 지정서
- ③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 ④ 신청기관 소속 지도전문요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 ⑤ 신청기관 지도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 ⑥ 평가지표별 서면심사 증빙자료

바 | 수련 정원 산정기준

○ 수련과정 급수별 정원 산정기준

- 1급 전문요원이 상근하는 수련기관은 1급과 2급 수련과정 운영 가능
- 2급 전문요원이 상근하며 1급 전문요원이 위촉된 기관은 2급 수련과정만 운영 가능
- 신규 및 증원 신청 당시의 상근 또는 위촉 지도전문요원으로 급수별 수련 정원을 산정하여 부여
- 지도전문요원이 수련 정원 한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기관의 수행능력,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청 인원 내에서 조정 가능
- 매년 증원규모 범위 내에서 전문요원 수급 등과 관련하여 지역별 안배를 고려

사 | 지도전문요원

○ 1급 지도전문요원 상근 시 수련 정원

-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 1명당 1급 수련생 각 연차별 2명(총 6명 이내) 혹은 연차별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1급과 2급 동시 지도 시 수련생 3인 이내 지정

○ 1급 지도전문요원 위촉 시 수련 정원

-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 위촉 1명당 2급 수련생 3인 이내 지정하며, 상근하는 2급 전문요원 1명 당 수련생 1명 이내 지정

* 예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련기관에서 상근하는 2급 전문요원 4명이 있으며, 1급 전문요원 1명을 위촉하고자 할 때, 총 3명까지 수련 가능(1급 위촉 또는 상근 모두 1명당 수련생 3명까지 가능하며, 위촉할 경우 반드시 상근하는 2급 전문요원이 수련생 1명당 1명씩 지정)

- 상기의 설명은 지도전문요원 대비 수련 정원 한도(최대인원)에 대한 것으로 정원 부여 시 해당기관의 교육 실적 및 교육능력,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원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부여함.

아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취소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 수련 운영계획 보고

○ 관련 규정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각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아래사항을 등록하여 보고

- 기관정보, 모집인원, 수련기간, 수련계약서(근로계약서)유/무, 수련 운영계획서 등

나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선발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각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생을 연 1회 모집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

- 모집을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정원 미달인 경우
- 모집한 수련생이 수련개시 전 또는 3월 이내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 모집한 수련생이 수련자격 미달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각 수련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관련 학·협회 및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 공고 하고 선발은 자율적 운영

○ 모집 시기

- 수련개시일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련생 모집

* 수련개시는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매년 3월에 시작할 것을 권고하며, 기관별·과정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수련기관에서는 수련생 모집 시 수련생의 수업시간, 수업료, 수련과정 동안 지급되거나 지원되는 금품, 복지 등을 반드시 고지
 - 수련기관은 수련생의 급수별 수련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수련기관에서는 수련생 모집 시 자격 요건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의 경우, 국가자격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련을 개시할 수 있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의 경우,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련을 개시할 수 있음.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의 경우, 국가자격인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련을 개시할 수 있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의 경우, 국가자격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에 의거하여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련을 개시할 수 있음.
- * 수련 개시 당시, 국가 면허·자격번호(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2급)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수련이 인정되지 않음.
 -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수련개시 전 졸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수과목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련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수련생 선발 시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전공과 이수과목을 확인하고, 과목명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인정과목)과 상이할 경우는 유사과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임상심리 유사과목의 인정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심리학 전공이란 명칭에 “심리”가 들어간 학과 또는 학위만 인정하되 대학원 세부전공은 인정하지 않음(2010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 * 예시: 교육학과 발달심리전공(불인정)

가 | 수련생 모집보고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
 - 3년간 수련을 받는 1급 수련생의 경우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는 매년 시행
- 수련생 모집사항을 기한 내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입력사항 : 수련기간, 수련생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수련분야, 급수 및 연차, 졸업학교명 및 학과·학위, 자격·면허번호)
 - 파일첨부 : 수련생 사진(이미지 파일만 등록 가능), 자격·면허증, 심리학 학위소지자는 학위증명서 및 임상심리관련 과목 이수 확인을 위한 성적증명서
 - 각 수련생별 담당 지도전문요원 등록
- 자격·면허증 번호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번호 또는 간호사 면허번호, 작업치료사 면허증 번호, 임상심리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되, 심리학에 대한 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음.
- 등록내용과 첨부파일을 비교하여 성명, 생년월일, 자격·면허증 번호 등이 상이할 경우 모집보고가 인정되지 않음.
- 한 수련기관 내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중 두 가지 이상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각 분야별로 별도 보고하며, 수료보고도 동일
 - 단, 한 과정 중 급수가 달리 개설된 경우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음.

나 | 지도전문요원 등록

- 수련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지도전문요원을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입력사항 :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연락처, 이메일, 주요 경력사항(수련지도 경력),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격증 사본
-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지도전문요원이 변경되는 경우, 수련지도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이 기재된 공문 및 신임자의 재직증명서,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위촉일 경우 위촉장을 관리시스템 업로드
 - 공문 기재 내용 : 수련지도 전임자 및 신임자명과 수련지도 기간, 수련생 명, 변경사유 등

가 | 수련 기간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2급 1년 이상, 1급 3년이상 수련을 마쳐야 함.
 -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매년 3월 초 시작할 것을 권고하며, 기관별·과정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수련 개시일로부터 1년을 수련기간으로 하여야 함.
 - * 예시: 4월 1일 ~ 익년 3월 31일
 - * 수련기간 1년 미만 시 자격취득 기준에 미충족됨.

나 | 수련기관 유의사항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이 최적의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실습을 이유로 과중한 업무를 대행하지 않도록 점검 및 감독을 하여야 함.
- 수련기관의 장은 이론 및 실습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에서 증빙자료 확인 요청 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수료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수련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시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련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 수련생 관련 자료물 보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전문요원 승급 신청 시 검토가 필요한 수료예정자 명부, 실습 확인서, 수료증은 준영구 보관하도록 함.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이 수련과 근로를 병행할 경우, 수련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수련계약서를 근거로 이론과 실습교육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함.
- 수련 시, 연장수련을 권고하지 않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생의 동의 하에 지도전문요원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연장수련시간을 정하여 진행되도록 함.
 - * 개인과제, 개인응무에 대한 사항은 연장수련에 포함되지 않음.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이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함.
- 이론과정 일부를 관련 학·협회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거나 수련기관 공동으로 학습하는 것도 인정(이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보관)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및 준수하여야 함.

다 | 수련생 유의사항

- 수련생은 수련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련생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련기관의 장 또는 지도전문요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 수련생은 수련 중 또는 수련 후 본인이 수련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유의
- 수련생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련기관의 장이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함.

라 | 수련기관 변경 및 수련휴식

- 수련생은 수련기간 동안 임의로 수련기관을 변경하거나 수련휴식을 할 수 없으며 수련기관의 장은 승인 요청 공문을 증빙서류와 함께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발송
- 수련기관 변경에 대한 승인이 가능한 경우
 - 수련기관 및 과정이 폐쇄되거나 수련기관이 3개월(90일)이상 영업정지를 부과 당한 경우 등
 - * 과징금 등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고 실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제외
- 수련휴식이 가능한 경우
 - 수련생이 불의의 사고, 질병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하여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 「정신건강복지법」제18조에 따른 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시, 수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수련휴식 인정기간은 최대 1년 이내 가능하며 수련 개시 시 기존 모집정원 별도인원으로 수련 가능
- 다음 해 수련 개시 시 해당연도 수련생과 동일하게 모집보고를 하되 수련기간은 휴식 전 수련 개시일 부터 수련 종료일로 입력함.
- 1년 이상(1,000시간)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수료 보고하되, 수료 보고 시 수련휴식 전부터 수련 종료일까지의 결과를 보고함.

* 예시: (6개월 수련휴식일 경우) 2026년 3월 1일 ~ 2027년 8월 31일

마 | 수련생 중도포기

- 수련기간 중 수련생은 수련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수련생 본인 및 수련 지도전문요원이 자필 서명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중도포기 사유서’를 지체 없이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
 - 수련기관은 수련생 수련과정 중도포기 공문을 증빙서류(중도포기 사유서)와 함께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발송
 - 수련생이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해당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향후 수련을 재개할 경우에는 신규 수련생과 동일하게 처리
- 승인받지 않은 수련휴식, 수련생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수련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는 수련 중도 포기로 간주하고 수련기관은 수련생 수련과정 중단 보고 공문을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발송

바 | 교환수련 운영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과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는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타 유형의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 실습시간의 4분의 1(연간 208시간)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여야 함.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가능함.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는 경우
 - 실습시간의 4분의 1(연간 208시간) 이상을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상근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함.
- 교환수련기관 선정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이 다양한 정신건강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환수련기관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협약 시에는 교환수련이 이루어지는 기관장, 수련담당자, 실습인원, 실습기간, 실습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교환수련기관장은 수련생이 최적의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습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각 수련생에게 해당기관장 명의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함.
- 교환수련 시 지도전문요원
 - 교환수련기관에 상근하는 동일한 직역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사회 내 기관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직역의 1급 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동일한 직역의 2급 또는 다른 직역의 전문요원이 지도할 수 있음.(정신의료기관으로 교환수련을 보내는 경우는 제외)

사 | 교환수련 관련 유의사항

-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계획서 작성 시 교환수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교환수련 관련하여 아래의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함.
 - 교환수련 계획서(목적 등 개요)
 - 교환수련 일정표
 - 교환수련기관과의 협약서(교환수련생명, 교환수련기관명, 교환수련기간 명시)
 - 교환수련기관 지도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 교환수련기록지(수련일지 등)
- 지도전문요원은 수련생이 교환수련기관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수련을 받고 있는지 점검·감독하여야 함.

아 | 학술활동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연 20시간의 학술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도전문요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학술활동은 수련기관이 인정한 정신건강관련 학술 행사에 한함.
 - * 수련기관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행사는 해당되지 않음.
 -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은 지도전문요원 승인 하에 학술활동으로 인정가능. 다만, 수련생의 다양한 학술활동 참여를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총 8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인정

자 | 수련평가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학·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음.
 - 수련기관의 학습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학·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함.
 - 학습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학·협회 또는 단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 실습평가는 각 수련기관에서 직역별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 자세 및 품행 등을 기반으로 실습 평가서를 마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실습평가 결과는 수련기관의 장이 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료보고 시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자체평가서 양식(예시수록)

가 | 수료보고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각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
- 수련기관은 수련생의 수료보고 사항을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
 - 입력사항 : 수련기간 및 수련생 정보, 이론/실습/교환(파견)수련/학술 이수시간, 학습평가 결과, 교환(파견)수련기관명 등록
 - 실습확인서(수련기관장 직인 포함) 업로드
- 모집보고와 같이 한 기관 내 다수의 과정이 운영되는 경우 영역별로 별도 보고하되, 영역 내 1급 및 2급을 동시 보고하는 경우 일건으로 처리
 - * 1급 수련과정의 경우 수료보고는 연차에 따라 매년 보고하여야 함.
- 수련기관의 장은 모든 수련 과정을 이수한 수련생에게 수료증을 교부
 - 2급 과정, 1급 과정 3년차 수료 시 발급하고, 1급 과정의 경우 매년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 단, 1급 과정 수련생의 2급 자격증 발급을 위해 수료증 교부가 가능함.
- 수료증(고시 별지 제5호서식)에는 수료증의 발급 연번, 수련생의 성명, 생년월일, 수료를 증명하는 과정명, 수련 기간의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이 기록되어야 함.
 - 수료증의 발급연월일은 수련 종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수료증은 수련기관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함.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세부 교육내용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구분	과목 (시간)	2급 또는 1급 1년차		과목 (시간)	1급 2년차		과목 (시간)	1급 3년차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이론	개인심리 치료(30)	심리치료	30	개인심리 치료(30)	인지행동치료	30	집단치료II (20)	고급 심리치료	20
	심리평가 (30)	심리평가	30	심리평가II (30)	심리평가I	30			20
	정신사회 재활이론 (30)	(공)정신건강복지법과 정책의 이해	(2)	정신사회 재활실제 (30)	(공)국가정신건강정책의 이해	(2)	임상심리 연구방법 (20)	정신건강사업의 기획 및 운영	4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2)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2)		임상실무에서의 임상연구의 활용	12
		(공)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4)		(공)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4)		사회문제의 임상심리학적 이해	4
		(공)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역할과 윤리	(2)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윤리	2		가족치료 및 심리교육	15
		(공)타 직역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2)		임상연구 윤리	2			
		(공)정신건강복지사업의 기획과 평가	(2)		전산화 기기를 통한 통계분석	2			
		심리학적 연구 방법의 이해	2		심리학적 연구 설계의 이해	2			

구분	과목 (시간)	2급 또는 1급 1년차		과목 (시간)	1급 2년차		과목 (시간)	1급 3년차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임상심리실무 및 최신 임상심리학의 이해	2		임상심리실무 및 최신 임상심리학의 이해Ⅲ	2						
		(공)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2)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체계의 이해	2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4)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4)		심리평가Ⅲ	5			
		(공)응급위기관리	(4)		(공)응급위기관리	(4)						
		심리자문Ⅰ	2		심리자문Ⅱ	2		소아청소년 년심리장애 (15)	10			
		(공)치료적 의사소통	(4)		집단치료	20						
	면담기법 (20)		면담기법	16	집단치료Ⅰ (30)	정신건강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0	노년기심 리 장애(15)	5			
									10	노년기심리장애	10	
	정신병리학 (이상 심리학) (30)	(공)중독질환의 이해	(2)	신경심리 평가(20)	정신병리학Ⅱ	5	20	심리학적 자문(15)	심리자문Ⅲ	10		
		(공)재난의 이해	(2)		신경심리평가	15					임상심리지도감독	5
		정신병리학Ⅰ	26		지역사회심리학	10						
	정신약물학 (10)	(공)정신질환 및 약물치료	(8)	지역사회 심리학 (10)		10	10					
		정신약물학	2									
		소 계	150 (40)			소 계	150 (16)	소 계		100		
실습	심리평가 (330)	심리평가	330	심리/신경 심리평가 (280)	심리평가	280	280	심리평가 (250)	심리평가	250		
	개인/집단 심리치료 (150)	심리치료	150	개인/집단 심리치료 (200)	심리치료	180	200	개인/집단 심리치료 (280)	심리치료	240		
					인지행동치료	20	임상심리지도감독		40			

구분	과목 (시간)	2급 또는 1급 1년차		과목 (시간)	1급 2년차		과목 (시간)	1급 3년차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정신사회 재활(15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100)	정신사회 재활(150)	프로그램 기획의 실제	14	정신사회 재활(150)	임상심리연구 및 자문	20
		(공)응급위기관리	(6)		임상심리연구 및 자문	20		심리자문	10
		(공)중독질환의 이해	(6)		심리자문	10		정신사회 재활	100
		(공)재난의 이해	(6)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100)		시설운영의 실제	20
		지원업무의 실제	12		(공)응급위기관리	(6)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6)						
	개별사례 분석(200)	(공)타 직역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6)	개별사례 분석(200)	사례회의의 및 사례발표	200	개별사례 분석(200)	사례회의의 및 사례발표	200
		임상심리연구 및 자문	8						
		사례회의의 및 사례발표	200						
	소 계		830 (130)		소 계	830 (106)		소 계	880
학술 활동			20			20			20

* () 괄호 안에 있는 시간은 공통과목 시간 배정임.

2. 정신건강간호사

구분	과목 (시간)	2급 또는 1급 1년차			과목 (시간)	1급 2년차			과목 (시간)	1급 3년차	
		세부과목명				세부과목명				세부과목명	
이론	건강사정 및 진단(I) (30)	(공)정신건강간호사의 역할과 윤리	(2)	건강사정 및 진단(II) (50)	건강 사정 및 진단(II)	50	건강사정 및 진단(III) (30)	건강 사정 및 진단(III) (30)			
		정신건강이슈에 대한 간호대응 전략	5								
		(공)치료적 의사소통	(4)								
		(공)중독질환의 이해	(2)								
		(공)재난의 이해	(2)								
		건강 사정 및 진단	15								
	정신간호 중재 및 치료(I)(6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4)	정신간호 중재 및 치료(II) (6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4)	60 (4)				
		(공)응급위기관리	(4)								
		(공)정신질환 및 약물치료	(8)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I)	44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26)	발달단계별 정신건강문제와 간호	11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II)	52					
		주요정신질환과 간호	15								
	지역사회 정신간호 (25)	(공)정신건강복지법과 정책의 이해	(2)	정신건강 행정 및 정책(10)	(공)국가정신건강정책의 이해	(2)	10 (8)		정신간호 중재 및 치료(III) (30)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2)								
		(공)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4)								
		(공)타 직역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		6									
(공)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2)									
간호연구 (9)	정신건강시설 설치 및 운영	7	사례관리(I) (재택중심) (30)	사례관리(I)(재택중심)	30	30	사례관리(II) (기관중심) (40)	사례관리(II)(기관중 심)			
	(공)정신건강복지사업의 기획과 평가	(2)									
	정신건강복지사업 계획 및 보고서 작성	2									
	정신건강복지사업 연구 동향	5									
		소 계	150 (40)			소 계	150 (16)			소 계	100

구분	과목 (시간)	2급 또는 1급 1년차		과목 (시간)	1급 2년차		과목 (시간)	1급 3년차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실습	건강사정 및진단(I) (150)	(공)중독질환의 이해 (6)	150 (12)	건강사정 및 진단(II) (150)	건강 사정 및 진단(II)	150	건강사정 및 진단(III) (150)	건강 사정 및 진단(III)	150	
	정신간호 중재 및 치료(I) (36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100)	(6)	정신간호 중재 및 치료(II) (53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100)	530 (106)	정신간호 중재 및 치료(III) (500)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III)	500	
			(6)		(공)응급위기관리					
			24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II)					424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I)		230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240)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240	240	사례관리(I) (재택중심) (150)	150	사례관리(II) (기관중심) (230)	사례관리(II)(기관중심)	230	
	지역사회 정신간호 (40)	지역사회 정신간호	40	40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6)	40	40						
	간호연구 (40)	(공)타 직역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6)	40	40	간호사례연구	20	830 (130)	소 계	880	
		정신건강복지사업 기획 (12)	8	12						
학술 활동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20		20		20		20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시간)	2급 또는 1급 1년차		과목 (시간)	1급 2년차		과목 (시간)	1급 3년차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이론	정신건강 기초(35)	(공)정신건강복지법과 정책의 이해	(2)	정신건강 기초(20)	(공)국가정신건강정책의 이해	(2)	정신건강 기초(16)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복지 조사 연구	16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2)							
		(공)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4)							
		(공)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윤리	(2)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2)				
		(공)타직역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2)		(공)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4)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 조사 연구	7			정신건강 기초(16)				
		정신건강사회복지 행정 실무	6							
		(공)중독질환의 이해	(2)							
		(공)재난의 이해	(2)							
		(공)치료적 의사소통	(4)							
		(공)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2)							
	사정 및 평가(20)	(공)정신건강복지사업의 기획과 평가	(2)	사정 및 평가(40)	정신건강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0	사정 및 평가(36)	정신건강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8	
		정신건강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4		심리사회적사정 및 개입	36				
		심리사회적사정 및 개입	14							
정신의학 (25)	(공)응급위기관리	(4)	정신의학 (25)	(공)응급위기관리	(4)	정신의학 (6)	정신병리 및 진단에 따른 면담	6		
	(공)정신질환 및 약물치료	(8)		정신병리 및 진단에 따른 면담	21					
	정신병리 및 진단에 따른 면담	13								
사회사업 치료(2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4)	사회사업 치료(5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4)	사회사업 치료(36)	재활훈련프로그램	16		
	재활훈련프로그램	4		재활훈련프로그램	16				정신건강사회복지실천이론	20
	정신건강사회복지실천이론	12		정신건강사회복지실천이론	30					

구분	2급 또는 1급 1년차			1급 2년차		1급 3년차		
	과목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과목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과목 (시간)	세부과목명
	정신건강 문제(10)	정신건강이슈와 정신건강서비스	10	정신건강 문제(15)	정신건강이슈와 정신건강서비스	15	정신건강 문제(6)	정신건강이슈와 정신건강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40)	정신사회재활 및 사회복지서비스 집단,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25 15					
		소 계	150 (40)		소 계	150 (16)		소 계
	사회사업 사정(250)	심리사회적사정 및 개입	250	사회사업 사정(250)	사회사업사정	250	사회사업 사정(250)	사회사업사정
실습	사회사업 치료(100)	퇴원(퇴소)계획 및 사후관리	100	사회사업 치료(100)	퇴원(퇴소)계획 및 사후관리	100	사회사업 치료(100)	퇴원(퇴소)계획 및 사후관리
	사회사업 치료II (23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집단활동요법 정신건강사회복지 프로그램	(100) 230 (100) 30	사회사업 치료II (230)	집단활동요법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정신건강사회복지 프로그램	100 230 (100) 30	사회사업 치료II (260)	집단활동요법 정신사회 재활치료 정신건강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사업 치료III (250)	(공)공보건·전달체계의 이해 (공)타지역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공)응급위기관리 (공)중독질환의 이해 (공)재난의 이해 지역사회자원 조직 및 자원연계 가정방문지도 및 가족교육 재활훈련프로그램	(6) (6) (6) (6) (6) 100 50 70	사회사업 치료III(2 50)	지역사회자원 조직 및 자원연계 (공)응급위기관리 가정방문지도 및 가족교육 재활훈련프로그램	100 (6) 44 100	사회사업 치료III (270)	가정방문지도 및 가족교육 지역사회자원 조직 및 자원연계 재활훈련프로그램
		소 계	830 (130)		소 계	830 (106)		소 계
학술 활동			20			20		

4.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시간)	2급 또는 1급 1년차		과목 (시간)	1급 2년차		과목 (시간)	1급 3년차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이론	정신건강 기초(30)	(공)정신건강복지법과 정책의 이해	(2)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30)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III (30)	30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III (3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III	20 20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2)												
		(공)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4)												
		(공)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윤리	(2)												
		(공)타직역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2)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20)	정신건강 평가와 진단	1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II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II(60)	30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II(6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II	20 20
		(공)중독질환의 이해	(2)												
		(공)재난의 이해	(2)												
		(공)치료적 의사소통	(4)												
		(공)정신건강복지사업의 기획과 평가	(2)												
정신건강 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50)	정신건강작업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7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II	정신건강 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II(60)	(4) 56	정신건강 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II(60)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II	40 4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11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I	29													
	(공)정신질환 및 약물치료	(8)													
	(공)응급위기관리	(4)													
생애주기 정신건강 작업치료 (30)	치료 환경과 정신건강작업치료	9							생애주기 정신건강 작업치료II (4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4) 36	생애주기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40)	생애주기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30 30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	6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4)													
	정신건강이슈와 작업치료 접근	3													
	생애주기 정신건강 작업치료 직업재활	13													
정신건강 작업치료 연구(20)	정신건강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4	정신건강 작업치료 연구(20)	(공)정신건강복지법과 정책의 이해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공)정신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 정신건강 작업치료 연구	(2) (2) (4) 12	정신건강 작업치료 연구(20)	정신건강 작업치료 연구	10 10							
	정신건강 작업치료 연구	3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15													
	(공)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2)													
		소 계							150 (40)			소 계	150 (16)		

구분	과목 (시간)	2급 또는 1급 1년차		과목 (시간)	1급 2년차		과목 (시간)	1급 3년차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세부과목명	시간			
실습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프로그램 개발	24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250)	정신건강 작업치료 평가(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250	
		정신건강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16									
		정신건강 평가와 진단	105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105									
	정신건강 작업치료 (100)	(공)공공보건·복지전달체계의 이해	(6)	정신건강 작업치료 (100)	(공)응급위기관리	(6)	정신건강 작업치료 (100)	정신건강 작업치료 (100)	정신건강 작업치료	정신건강 작업치료	100	100
		(공)타 직역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6)									
		(공)응급위기관리	(6)									
		(공)중독질환의 이해	(6)									
		(공)재난의 이해	(6)									
	정신건강 작업치료II (230)	정신건강 작업치료	70	정신건강 작업치료II (23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100)	정신건강 작업치료II (230)	정신건강 작업치료II (260)	정신건강 작업치료II	정신건강 작업치료II	260	260
		(공)정신사회 재활치료	(100)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25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작업치료의 실제	130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250)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250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250)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270)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정신건강 작업치료III	270	270
		정신사회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	200									
			중재계획수립	50								
		소 계		830 (130)		소 계		830 (106)		소 계		880
학술 활동			20			20					2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중도포기 사유서

수련기관 :

수련과정 :

성 명 :

연 락 처 :

위 본인은 사유로 인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자발적으로 중도포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현재까지 진행한 수련과정이 추후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월

수련생 (인)

수련책임자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계약서 (예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수련기관, 지도전문요원 및 수련생 간의 세부적인 수련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1. 수련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규정된 수련과정을 성실히 운영한다.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수련생의 수련시간인 1,000시간(2급 및 1급 1,2년차: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1급 3년차: 이론 100시간, 실습 88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2. 지도전문요원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수련생을 성실히 지도하며,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인격적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전인적인 지도를 한다.
3. 수련생은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수련기간 및 시간을 준수하고, 수련과정을 성실히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련을 중단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지도전문요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수련조건)

법령과 지침에서 정해진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정하며, 본 기관의 수련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따른다.

1. 수련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수련지도 : 실습수련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 수련지도를 연간 ○○시간 이상 제공하도록 한다.
단, 기관 및 지도전문요원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수련지도 시간을 변경하게 될 경우 수련생에게 사전 공지를 한다.
3. 교육비 : 총 원(수련지도비 포함)
* 수련 중도 포기 시 환불기준 및 환불 받을 수 있음 안내

제4조 (교환수련)

교환(파견)수련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환수련 협약에 따라 수행한다.

1. 교환(파견) 수련기관 :
2. 교환(파견) 수련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예정(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련기관, 수련 시간 변경 가능
3. 교환(파견) 수련기관 담당자 : (자격:)

제5조 (수련과제)

지도전문요원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수련 과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 (준수사항)

1. 수련과정 중 지도전문요원 및 수련생은 본 기관의 수련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2. 수련과정 중 지도전문요원 및 수련생은 ○○○학(협)회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3.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 지도전문요원 및 수련생 간의 윤리적인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이를 ○○○학(협)회 또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에 따른다.
4. 수련생은 교육 시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수련 중 또는 수련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계약의 종료와 해지)

1.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수련계약은 당연 종료한다.
2. 본 계약기간 중, 본인 의사에 의한 수련 중단 혹은 기관의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 중지 또는 수련자격이 박탈될 경우 수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수련기관장	(인)
수련책임자	(인)
수련생	(인)

* 수련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수련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학·대학원의 임상심리 관련 인정과목 (2010년 입학자부터)

대학원	필수과목 (4과목)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 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선택과목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 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
		기초 및 응용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
대학	필수과목 (4과목)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 (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선택과목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
		기초 과목 중 택 3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
		응용 과목 중 택 2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4조제1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임상심리 관련 과목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인정을 위한 이수과목 인정 범위 (대학원)
(2009년 11월 이전 대학원 입학자 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 임상심리관련과목		유 사 과 목 명 (대학원)
필수 과목 (4과목)	1. 정신병리학 (혹은 고급이상 심리학)	고급정신병리학, 정신병리학특강, 정신병리학세미나, 정신병리학 및 실습, 정신병리 세미나, 정신병리
	2. 심리평가 (혹은 심리진단)	심리평가 I,II, 고급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검사총론, 심리진단연구, 심리진단검사 세미나, 심리평가 및 진단, 성인용 심리진단 검사, 심리진단 검사, 고급심리진단, 진단평가 세미나, 심리평가세미나, 임상성격평가 및 실습, 성인심리검사, 성인심리검사 및 실습, 임상심리 평가 및 진단, 심리검사와 활용, 심리검사연구, 심리검사, 심리평가의 실제, 개인심리검사, 심리검사 및 실습
	3. 심리치료 (혹은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심리사회재활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고급심리치료 및 상담이론,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심리치료연구, 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최신심리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심리치료 및 실습,I,II, 최신심리치료이론과 실제, 건강심리치료, 심리치료 세미나, 상담심리학 및 심리상담사례 연구, 상담심리학 이론,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4. 연구방법론 (혹은 고급심리 통계, 고급심리설계)	심리연구방법론, 연구설계 및 통계, 고급통계학, 실험설계법, 심리학연구방법론, 심리통계, 고급심리연구법, 심리통계특론, 심리실험설계특론, 통계, 양적연구방법론, 고급심리통계, 실험설계방법, 통계 및 실험설계, 고급심리통계학연습, 심리학실험설계, 심리학연구법, 고급연구방법론, 고급심리통계학, 상담 및 임상심리학연구방법, 임상 및 상담심리 연구방법, 심리학연구방법론, 심리사회통계학, 심리통계학 및 연구법, 심리통계 및 컴퓨터 실습
선택 과목 (16과목 중 3과목 이상)	1.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고급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세미나, 인지행동치료세미나, 인지 및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및 상담, 행동 및 인지치료, 인지행동상담과 심리치료, 인지치료 세미나
	2. 행동치료	행동수정이론, 행동수정, 행동치료법
	3. 집단치료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경험,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 이론과 실습, 집단심리치료,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치료세미나, 고급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연구, 고급집단상담실습 및 지도, 집단상담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 임상심리관련과목		유 사 과 목 명 (대학원)
선택과목 (16과목 중 3과목 이상)	4. 재활심리학	정신재활개입방안세미나, 재활진단 및 평가, 정신재활, 정신사회재활심리 및 실습, 고급심리사회재활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5. 발달정신병리학	고급발달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 발달장애의 진단 및 치료, 발달정신병리학연구, 발달장애세미나, 고급발달장애
	6. 신경심리학	신경심리평가, 신경심리평가법, 고급신경심리학, 고급임상신경심리학, 신경심리학연구, 신경심리 및 정신생리학실습, 신경해부학, 인지신경심리학, 신경인지과학, 신경언어심리학, 신경심리세미나, 신경심리평가 및 재활
	7. 임상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실습, 임상심리실습, 임상실습 및 슈퍼비전, 임상 및 상담 현장실습, 임상실습연구, 임상 및 상담실습과 슈퍼비전(1-4), 상담 및 임상실습1,2, 상담 및 임상현장실습, 임상실습 및 심리치료, 임상심리현장실습, 임상현장실습 I, II, 고급임상현장실습, 임상현장 실습과 슈퍼비전, 임상실습 및 현장 연구, 고급임상심리학 현장 실습
	8. 건강심리학	고급건강심리학, 건강심리학 특강, 행동의학, 행동의학 및 임상건강심리학, 건강심리세미나, 정신신체의학
	9. 지역사회심리학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재활
	10. 고급측정이론	태도 변화와 측정, 태도측정 및 척도제작연구, 심리측정법, 심리측정, 심리측정학, 고급심리측정, 계량심리학세미나, 심리검사 및 측정, 심리측정과 검사이론, 변량분석, 심리측정 및 평가
	11. 고급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특론
	12. 고급생리심리학	생리심리학, 생리심리, 생리심리세미나, 생물심리학, 고급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및 실습
	13. 고급학습심리학	인간 학습 및 기억, 학습과 기억, 학습 및 기억연습, 인지 및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학습심리세미나, 학습심리학 및 실습
	14. 고급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특론, 인지이론특강, 인지 및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연습, 인지심리학세미나, 인지과학세미나, 인지심리학 및 실습
	15.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특론
	16. 의료 또는 보건정책론	정신건강정책론, 의료 및 건강정책론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인정을 위한 이수과목 인정 범위 (대학)
(2009년 11월 이전 대학 입학자 대상)

정신건강법 규정 임상심리관련과목		유 사 과 목 명 (대학)
필수과목 (4과목)	1. 정신병리학 (혹은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정신병리학특강, 정신병리학세미나, 정신병리학 및 실습, 정신병리 세미나, 정신병리
	2. 심리평가 (혹은 심리진단)	심리평가 I,II,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검사총론, 심리진단연구, 심리진단검사 세미나, 심리평가 및 진단, 성인용 심리진단 검사, 심리진단 검사, 심리진단, 진단평가 세미나, 심리평가세미나, 임상성격평가 및 실습, 성인심리검사, 성인심리검사 및 실습, 임상심리 평가 및 진단, 심리검사와 활용, 심리검사연구, 심리검사, 심리평가의 실제, 개인심리검사, 심리검사 및 실습
	3. 심리치료 (혹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심리사회 재활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심리치료 및 상담이론,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심리치료연구, 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최신심리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심리치료 및 실습,II, 최신심리치료이론과 실제, 건강심리치료, 심리치료 세미나, 상담심리학 및 심리상담사례 연구, 상담심리학 이론,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상담 이론
	4. 연구방법론 (혹은 심리통계, 심리설계)	심리연구방법론, 연구설계 및 통계, 통계학, 실험설계법, 심리학연구방법론, 심리통계, 심리연구법, 심리통계특론, 심리실험설계특론, 통계, 양적연구방법론, 실험설계방법, 통계 및 실험설계, 심리통계학연습, 심리학실험설계, 심리학연구법, 연구방법론, 심리통계학, 상담 및 임상심리학연구방법, 임상 및 상담심리 연구방법, 심리학연구방법론, 심리사회통계학, 심리통계학 및 연구법, 심리통계 및 컴퓨터 실습
선택과목 (16과목 중 3과목 이상)	1.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세미나, 인지행동치료세미나, 인지 및 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및 상담, 행동 및 인지치료, 인지행동상담과 심리치료, 인지치료 세미나
	2. 행동치료	행동수정이론, 행동수정, 행동치료법
	3. 집단치료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경험,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 이론과 실습, 집단심리치료,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치료세미나, 집단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실습 및 지도, 집단상담
	4. 재활심리학	정신재활개입방안세미나, 재활진단 및 평가, 정신재활, 정신사회재활심리 및 실습, 심리사회재활치료, 심리사회적 재활

정신건강법 규정 임상심리관련과목		유 사 과 목 명 (대학)
선택과목 (16과목 중 3과목 이상)	5.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 발달장애의 진단 및 치료, 발달정신병리학연구, 발달장애세미나, 발달장애
	6. 신경심리학	신경심리평가, 신경심리평가법, 신경심리학, 임상신경심리학, 신경심리학연구, 신경심리 및 정신생리학실습, 신경해부학, 인지신경심리학, 신경인지과학, 신경언어심리학, 신경심리세미나, 신경심리평가 및 재활
	7. 임상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실습, 임상심리실습, 임상실습 및 수퍼비전, 임상 및 상담 현장실습, 임상실습연구, 임상 및 상담실습과 수퍼비전(1-4), 상담 및 임상실습1,2, 상담 및 임상현장실습, 임상실습 및 심리치료, 임상심리현장실습, 임상현장실습 I, II, 임상현장실습, 임상현장 실습과 수퍼비전, 임상실습 및 현장 연구, 임상심리학 현장 실습
	8. 건강심리학	건강심리학, 건강심리학 특강, 행동의학, 행동의학 및 임상건강심리학, 건강심리세미나, 정신신체의학
	9. 지역사회심리학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재활
	10. 측정이론	태도 변화와 측정, 태도측정 및 척도제작연구, 심리측정법, 심리측정, 심리측정학, 심리측정, 계량심리학세미나, 심리검사 및 측정, 심리측정과 검사이론, 변량분석, 심리측정 및 평가
	11.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특론
	12. 생리심리학	생리심리학, 생리심리, 생리심리세미나,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및 실습
	13. 학습심리학	인간 학습 및 기억, 학습과 기억, 학습 및 기억연습, 인지 및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학습심리세미나, 학습심리학 및 실습
	14.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심리학특론, 인지기론특강, 인지 및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연습, 인지심리학세미나, 인지과학세미나, 인지심리학 및 실습
	15.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특론
	16. 의료 또는 보건정책론	정신건강정책론, 의료 및 건강정책론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0000년 상/하반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0급 과정 수련생 수련 실습평가서(예시)

성 명:		수련부서:			
평가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평 가 영 역	평 가 요 소		점수 기준		점수
전문지식 및 기술 (60점)	관련 지식 습득 및 동기(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평가 실무 능력(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재활 실무 능력(20)		0점(매우 미흡) ~ 20점 (탁월)		
	보고서 작성 능력(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치료적 관계 형성 능력(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협동심 및 품행 (20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등 협동심(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품위유지, 지시사항 수용 등 품행(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수련자세 (20점)	출·퇴근 상태(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직업 의식(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점수합계			총 점		/100
종합평정	탁월(96점 ~ 100점)		우수(80점 ~ 95점)		
	보통(60점 ~ 79점)		미흡(40점 ~ 59점)		
종합평가 의견					
평 정 자 및 확 인 자 서 명					
구 분	소 속	직위	직 급	성 명	서 명(인)
평 정 자					
확 인 자					

※ 평정은 담당 지도전문요원, 확인은 수련책임자가 실시함.

0000년 상/하반기 정신건강간호사 0급 과정 수련생 수련 실습평가서(예시)

성 명:		수련부서:			
평가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평 가 영 역	평 가 요 소		점수 기준		점수
전문지식 및 기술 (60점)	관련 지식 습득 및 동기(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관찰 및 이해력(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적응 및 분석력(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종합 및 평가 능력(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보고서 작성 능력(20)		0점(매우 미흡) ~ 20점 (탁월)		
협동심 및 품행 (20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등 협동심(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품위유지, 지시사항 수용 등 품행(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수련자세 (20점)	출·퇴근 상태(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직업 의식(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점수합계			총 점		/100
종합평정	탁월(96점 ~ 100점)		우수(80점 ~ 95점)		
	보통(60점 ~ 79점)		미흡(40점 ~ 59점)		
종합평가 의견					
평 정 자 및 확 인 자 서 명					
구 분	소 속	직위	직 급	성 명	서 명(인)
평 정 자					
확 인 자					

※ 평정은 담당 지도전문요원, 확인은 수련책임자가 실시함.

0000년 상/하반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0급 과정 수련생 수련 실습평가서(예시)

성 명:		수련부서:			
평가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평 가 영 역	평 가 요 소		점수 기준		점수
전문지식 및 기술 (60점)	관련 지식 습득 및 동기(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심리평가 실무 능력(20)		0점(매우 미흡) ~ 20점 (탁월)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실무 능력(20)		0점(매우 미흡) ~ 20점 (탁월)		
	연구, 자문 등 기타 실무 능력(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협동심 및 품행 (20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등 협동심(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품위유지, 지시사항 수용 등 품행(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수련자세 (20점)	출·퇴근 상태(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직업 의식(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점수합계			총 점		/100
종합평정	탁월(96점 ~ 100점)		우수(80점 ~ 95점)		
	보통(60점 ~ 79점)		미흡(40점 ~ 59점)		
종합평가 의견					
평 정 자 및 확 인 자 서 명					
구 분	소 속	직위	직 급	성 명	서 명(인)
평 정 자					
확 인 자					

※ 평정은 담당 지도전문요원, 확인은 수련책임자가 실시함.

0000년 상/하반기 정신건강작업치료사 0급 과정 수련생 수련 실습평가서(예시)

성 명:		수련부서:			
평가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평 가 영 역	평 가 요 소		점수 기준		점수
전문지식 및 기술 (60점)	관련 지식 습득 및 동기(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작업치료 평가 실무 능력(20)		0점(매우 미흡) ~ 20점 (탁월)		
	작업치료 중재 및 재활 실무 능력(20)		0점(매우 미흡) ~ 20점 (탁월)		
	보고서 작성 능력(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협동심 및 품행 (20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등 협동심(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품위유지, 지시사항 수용 등 품행(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수련자세 (20점)	출·퇴근 상태(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직업 의식(10)		0점(매우 미흡) ~ 10점 (탁월)		
점수합계			총 점		/100
종합평정	탁월(96점 ~ 100점)		우수(80점 ~ 95점)		
	보통(60점 ~ 79점)		미흡(40점 ~ 59점)		
종합평가 의견					
평 정 자 및 확 인 자 서 명					
구 분	소 속	직위	직 급	성 명	서 명(인)
평 정 자					
확 인 자					

※ 평정은 담당 지도전문요원, 확인은 수련책임자가 실시함.

실 습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과 정 : 정신건강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작업치료사

제 ☐1급 ☐2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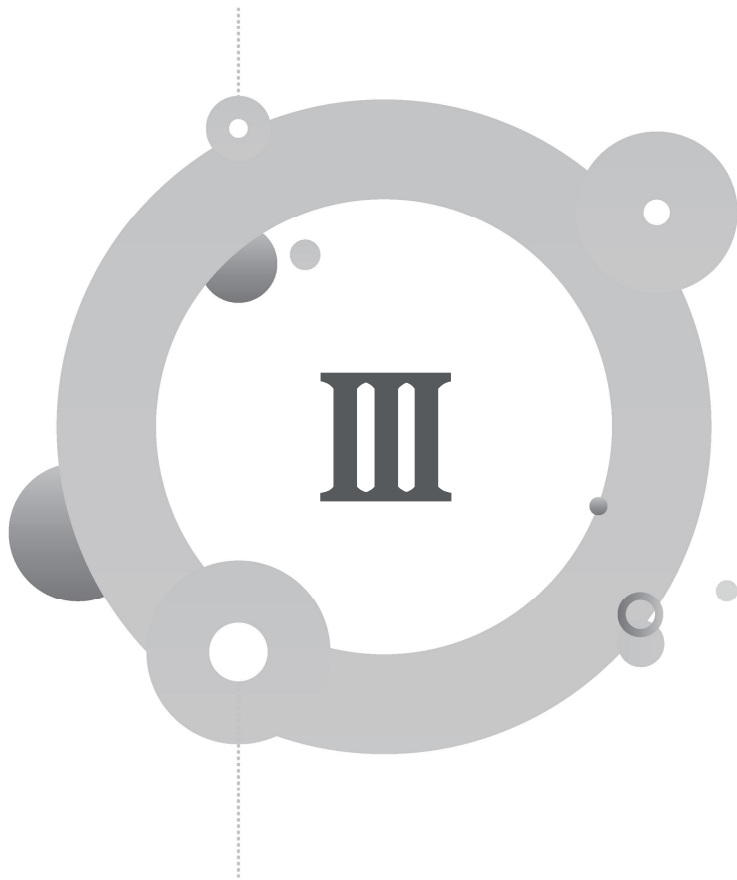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실습시간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_____ 수련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가 | 정신건강간호사 자격기준

- 정신건강간호사 2급은 다음 2가지 경우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간호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 정신건강간호사 1급은 다음 3가지 경우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나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기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은 다음 2가지 경우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 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다음 3가지 경우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기준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은 다음 2가지 경우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라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은 다음 2가지 경우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치료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마 | 외국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 국내 거주가 가능(즉, 출입국관리법 등)한 외국인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가능함.

바 | 외국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1] 비교
 -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자격 인정 기준
 -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와 유사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수련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 서류 제출
 - 해당국 교육·자격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된 학교(수련과정 운영) 또는 수련 기관(교육기관)에서 교육·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한정
 - *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원, 통신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자격 불인정
- 외국자격 인정 절차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외국자격 인정 요청 민원 접수
 - 4개 직역 소관 학·협회에서 외국자격 인정 관련 서류 확인 및 인정여부 등에 대한 의견제출
 -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에서 외국자격 인정 여부 심의
- 제출자료
 -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심의 요청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요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학교 또는 수련 기관(교육기관) 교육·수련과정 졸업·이수 증명서* 원본, 수련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외국 유사 자격·면허증 원본(최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확인되는 최신본 제출), 외국
자격증 관련 법령 및 규정(정신건강 업무가 포함된 내용)의 자료 및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아포스티유 각 1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기준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련과정과 유사한 과정임을 확인
가능한 내용 포함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1부
- 국내 자격 취득의 기본 요건이 되는 자격(면허)증 1부 등
- 기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경력 증명서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자격 인정 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홍길동	전화번호	
	E-mail (* 결과통보수신)			
신청분야	신청종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신청등급	
보유자격	국내자격		자격번호	
	유사자격		인정국가	
	취득일 (유효기간)		발행처	
학 력	학교명	국문 학교명 (원문 학교명)	전공	
	학 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 수련과정	1. 학위 및 수련과정 추가 기입사항(제출 서류에 대한 요약) ○ 박사/석사/학사 과정 - (실습중심 00과정) '17.8.23.~20.6.30 총 2,298.5시간 ○ 000 인턴십 과정 수료 - (근무기관) - (근무기간 및 시간) '20.8.6.~'21.7.30, 총1829.5시간 - (인턴십 내용)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가 과정을 위한 0000방법 등의 훈련 ○ 기타 0000과정 수료 - (근무기관) 00000 의과대학원 - (근무기간) '21.9.1.~'22.8.31, 총 2,000시간 2. 유사자격관련 상세 설명(제출 서류에 대한 요약) - (해당국가 관련법) 00국가 0000법 제00조 - (자격 관련 설명)			

구비서류	구분	관련서류	제출여부
	1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심의 요청서	☐ 제출 ☐ 미제출
	2	외국학위 졸업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 제출 ☐ 미제출
	3	외국학위 성적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 제출 ☐ 미제출
	4	외국 유사 자격·면허증 원본, 아포스티유 * 최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확인되는 최신본 제출	☐ 제출 ☐ 미제출
	5	수련(이론, 임상실습) 내용과 기간이 포함된 증명서 및 수련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원본, 번역 공증	☐ 제출 ☐ 미제출
	6	출입국사실증명서	☐ 제출 ☐ 미제출
	7	국내 자격취득의 기본 요건이 되는 자격(면허)증 * 정신건강간호사: 국내 간호사 면허증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증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내 임상심리사 자격증 (자격증이 없는 경우 성적증명서의 이수과목 확인)	☐ 제출 ☐ 미제출
	8	기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경력증명서 등)	☐ 제출 ☐ 미제출
	9	외국 자격증 관련 법령 및 규정(정신건강 업무가 포함된 내용)의 영문자료 및 국문 번역본(공증)	☐ 제출 ☐ 미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제출 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통하여 유사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거나, 잘못 기재 또는 제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요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요청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 항목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학력, 자격·면허 사항, 출입국 증명
수집 목적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요청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결과 통보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수집 항목	근무경력
수집 목적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요청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결과 통보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외국 유사자격 인정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선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중

가 | 신규 자격증 교부 신청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자격증 발급 신청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나 | 신규 자격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서
2. 수료증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4. 여권용 사진 파일
5.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6. 성적증명서(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신청에 한함)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 여권용 사진 파일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색배경, 해상도 300dpi(413*531픽셀) 5M 미만)
 - 주소 : 발급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우편번호 포함하여 기재
 - 전화 : 서류미비 시 원활한 보안을 위해 가능한 한 휴대전화번호 기록
 - 최종출신학교 : 신청자격과 관련한 최종출신학교를 기록
 - 전공과목 : 학위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상 표기된 정확한 학과명을 기록
 - 학위 : 수료 혹은 재학 중이 아닌 졸업으로 취득한 학위를 선택
 - * 예시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종별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임상심리 국가자격소지자에 한함), 작업치료사
 - 등급 : 기 소지한 자격의 급수 기재 (등급이 없는 경우 제외)
 - 번호 : 면허증 혹은 자격증 번호
 - 취득 연월일 : 면허증 혹은 자격증 하단에 기록된 발급일

- 수련기간/수료 연월일 : 연, 월, 일 ~ 연, 월, 일로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수료증에 기록된 수련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이 일치하여야 함.

○ 수료증

- 수련기관에서 교부받은 수료증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수료증을 스캔하여 관리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함. 수료증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재요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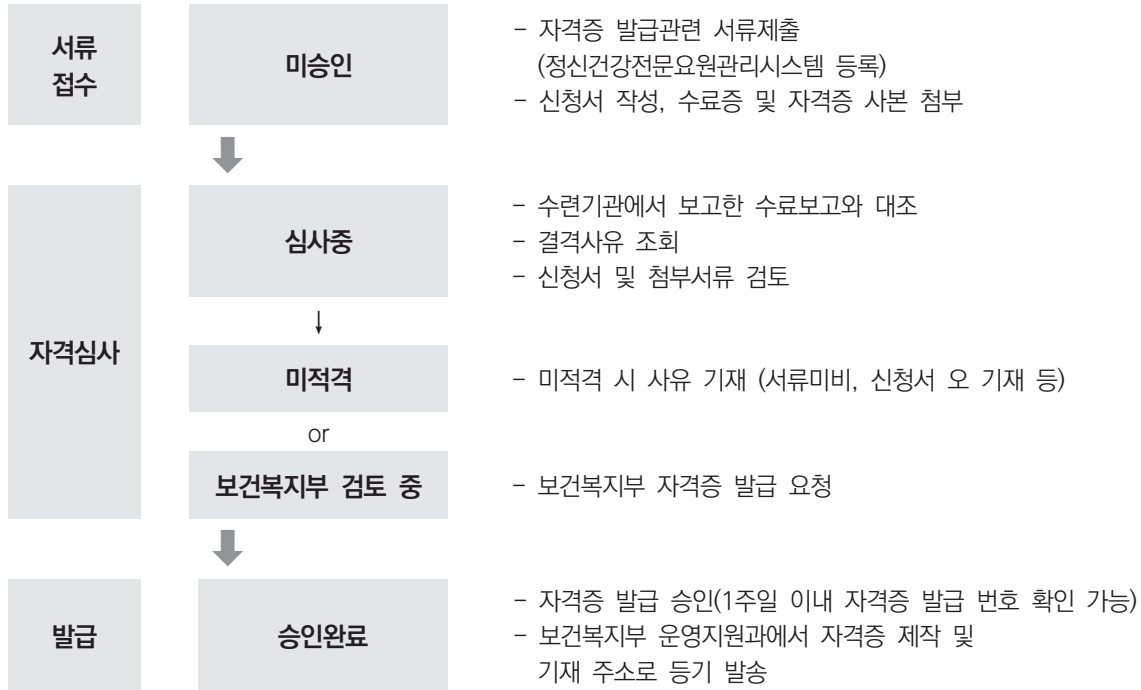
○ 정신전문간호사의 자격증

- 「간호법」에 의한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정신전문간호사 수료증 및 자격증 사본 첨부)

다 | 자격증 신청 시 참고사항

- 자격증을 신청하면 신청서, 사진, 수료증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모집보고, 수료보고, 자격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련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자격증 발송
- 자격증은 서류가 완비된 순서대로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한 순서대로 자격증이 발급되므로 심사 과정 중에 발급 순서가 바뀔 수 있음.

I 신규 자격증 발급 절차 I



라 | 1급 승급 자격증 교부 신청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자격증 발급 신청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마 | 자격증 승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서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년 정신건강 업무 증빙, 필요시 업무분장표 제출)
 - 1) 주근무시간 2) 휴직기간 또는 휴직여부 3) 업무내용
 - 1), 2), 3)의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로 제출
3. 근무경력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증 사본
5. 여권용 사진
6. 업무분장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중 해당기관에 한함)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 여권용 사진 파일 (3.5*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색배경, 해상도 300dpi(413*531픽셀) 5M 미만)
- 주소 : 발급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우편번호 포함하여 기재
- 전화 : 서류 미비 시 원활한 보완을 위해 가능한 한 휴대전화번호 기록
- 최종출신학교 : 신청자격과 관련한 최종출신학교를 기록
- 전공과목 : 학위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상 표기된 정확한 학과명을 기록
- 학위 : 수료 혹은 재학 중이 아닌 졸업으로 취득한 학위를 선택
 - * 예시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 종별 :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등급 : 기 소지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급수 기재
- 번호 : 2급 자격증번호
- 취득연월일 : 자격증 하단에 기록된 발급일
- 수련기간/수료 연월일 : 연, 월, 일 ~ 연, 월, 일로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수료증에 기록된 수련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이 일치하여야 함.

바 | 승급 자격증 신청 시 참고사항

- 정신건강 업무 5년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무경력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시 추가로 업무분장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질병, 육아 등 휴직 기간은 제외함.
- 자격증을 신청하면 승급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가 완비된 경우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자격증 발송
- 자격증은 서류가 완비된 순서대로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한 순서대로 자격증이 발급되므로 심사과정 중에 발급 순서가 바뀔 수 있음.

사 | 외국 국적자 추가서류

○ 제출 대상

- 외국 국적자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 교부 및 서식

- 외국 국적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한국어가 아닐 경우 번역·공증 필수).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자격증 신청서와 함께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단, 각국의 운영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증진 기관 및 시설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
 - 종합병원(대학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소속이거나 타과 소속일지라도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업무분장표 제출)
 - 정신과 단일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설병원(업무분장표 제출)
2. 보건소(정신보건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 업무분장표 제출)
3. 트라우마센터
 - 트라우마센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4. 중앙 및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5.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6. 법무부 스마일센터
7. 치매안심센터
8.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9. 보건복지부상담센터(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업무분장표 제출))
10. 경찰 마음동행센터(업무분장표 제출)
11.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사업
12.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13. 서울소방심리지원단
14.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5. 국민건강보험공단(가족상담지원서비스, 업무분장표 제출)
1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마음건강센터)(업무분장표 제출)
18.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사업
19. 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인력(업무분장표 제출)
20.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서비스(업무분장표 제출)
2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및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업무분장표 제출)
 - * (17개소) 중앙, 부산,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제주 (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
22.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간호사에 한정, 증명서에 정신간호분야에 근무 기재)
23.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4.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업무분장표 제출)(구, 서울심리지원센터)
25.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Wee 센터
26.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학생자살예방센터
27. 한국법무보호공단(심리상담업무, 업무분장표 제출)
28.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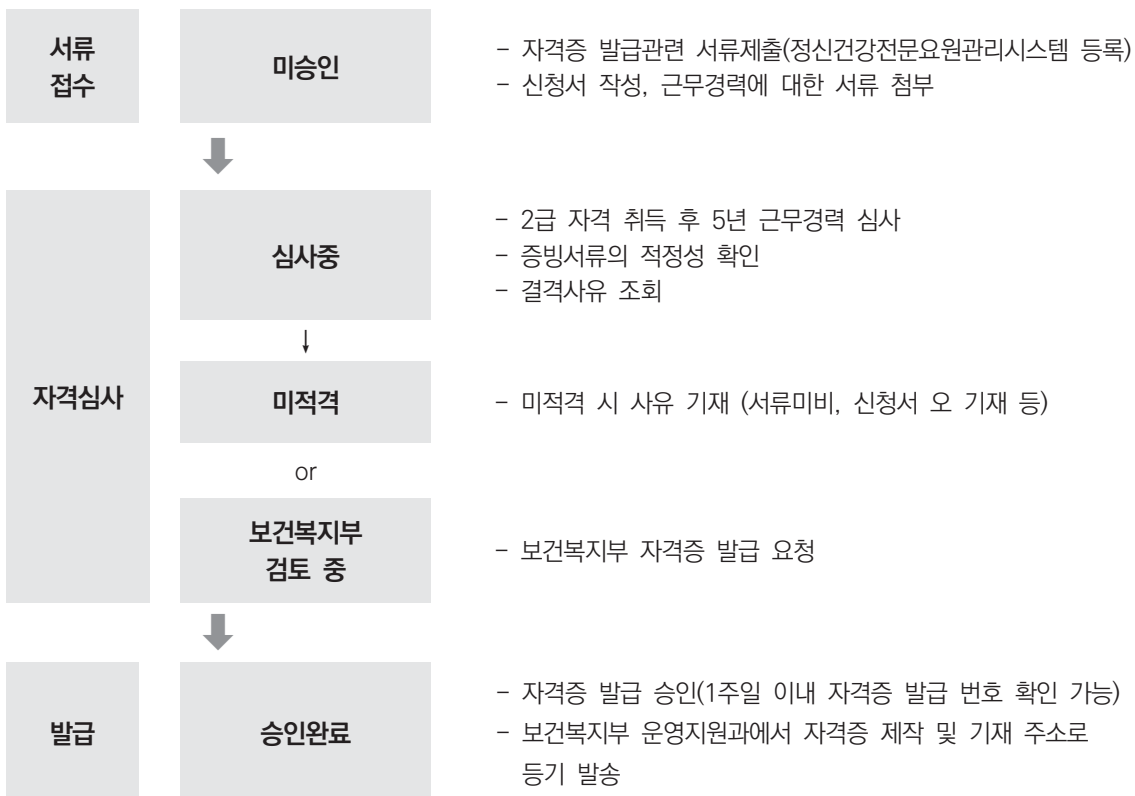
29.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
30. 법무부 보호관찰소(업무분장표 제출)
31. 법무부 소년원(업무분장표 제출)
32. 광역치매센터
33. 치매안심병원(업무분장표 제출)
34. 전남소방본부 동료심리상담사
35. 노숙인재활시설(업무분장표 제출)
36.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업무분장표 제출)
37.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심리검사업무, 업무분장표 제출)
38.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아동형/통합형)(심리지원팀, 업무분장표 제출)
39. 법무부 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 및 교정시설(심리치료과(팀), 업무분장표 제출)
40.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업무분장표 제출)
41.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업무분장표 제출)
42. 법무부 소년원 분류보호과(업무분장표 제출)
43. 법무부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서울, 대구, 대전, 광주)'(업무분장표 제출)
44. 법무부 교정기관 내 분류심사과, 보안과 분류팀(업무분장표 제출)

※ 관련 FAQ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급이 안 되나요?
 - 정신건강복지법령상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며,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격취득 후 정신과 2년, 신경과 1년, 재활의학과에 2년간 근무했습니다. 경력이 모두 인정되나요?
 -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신건강관련 업무내용, 업무수행기간, 인적사항, 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서 형태인 업무분장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경력인정 여부 심사 가능합니다.
- 업무분장표는 모든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나요?
 -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 실무경력 심사 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만으로 정신건강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분장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대상은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중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 저희 기관에는 업무분장표라는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 신청자의 업무내용, 업무수행기간,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직무기술서, 직무확인서 등 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OO노인요양병원에 근무 중인 정신건강간호사입니다. 자격취득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2년간 운영되다가 3년 전 노인요양병원으로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근무경력이 인정되나요?
 -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관련 업무내용, 업무수행기간, 인적사항, 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서 형태인 업무분장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경력인정 여부 심사 가능합니다.
- OO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다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력이 인정되나요?
 -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 경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 저는 OO심리상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입니다. 자격취득 이후 놀이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이 인정되나요?
 -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놀이치료실, 심리상담소, 상담심리센터, 심리상담연구소, 언어치료실, 아동 상담센터 등은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저는 OO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취득 이후 2년간 정신과에서 근무했는데 정규직이 아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근무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경력도 상근으로 종사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근무했던 기관이 폐업·휴업하여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 폐업, 휴업 전 운영에 대한 증빙서류(보건소에 정보공개청구서, 사실확인증명원 등을 요청하여 제출), 근무기간,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자기근무이력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를 제출하고, 심사 중 필요시 담당자가 이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Ⅰ 1급 승급업무 절차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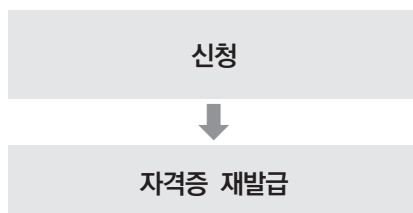
아 | 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자격증 재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면허(자격)민원에서 신청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신청
- (주소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

■ 자격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종 류	구비서류	처리기간
분 실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3.5*4.5cm) 2매 · 신분증 사본 1부	5일 (우편발송기간 및 공휴일 제외)
훼손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3.5*4.5cm) 2매 · 신분증 사본 1부 · 면허·자격증 원본(반납)	
이름, 주민번호 변경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3.5*4.5cm) 2매 · 신분증 사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 (개명시)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주민번호 변경시) · 면허·자격증 원본(반납)	
외국국적 변경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3.5*4.5cm) 2매 · 신분증 사본 1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각 1부 · 면허·자격증 원본(반납)	

■ 자격증 재발급 절차 ■



- 보건복지부 민원 안내 홈페이지 접수
<https://lic.mohw.go.kr/>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신청을 위한 근무경력표

신 청 인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신청종별	정신건강000	신청등급	0급

정신건강 증진사업 근무경력	근무기관	00병원	주요업무	정신건강의학과병동 재활프로그램 진행 등	총 근무경력
	근무부서	정신건강의학과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시간	주 40시간	휴직기간	휴직기간 없음	
	근무기관		주요업무		5년
	근무부서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시간	주 시간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기관		주요업무		
	근무부서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월
	근무시간	주 시간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기관		주요업무		
	근무부서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무시간	주 시간	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근무기관		주요업무		

구비서류	1. 경력(재직)증명서(근무부서, 주요업무, 근무시간, 휴직기간 기재)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업무분장표(필요시) 4.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수행 입증자료(필요시)
------	--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신청방법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에서 인터넷 신청
 - (신청절차) 관리시스템 > 자격증발급신청 > 자격증승급 > 자격증 승급 신청
 - (등록방법) 파일첨부 > '증빙서류' 파일 첨부 란에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 함께(Zip파일 압축) 업로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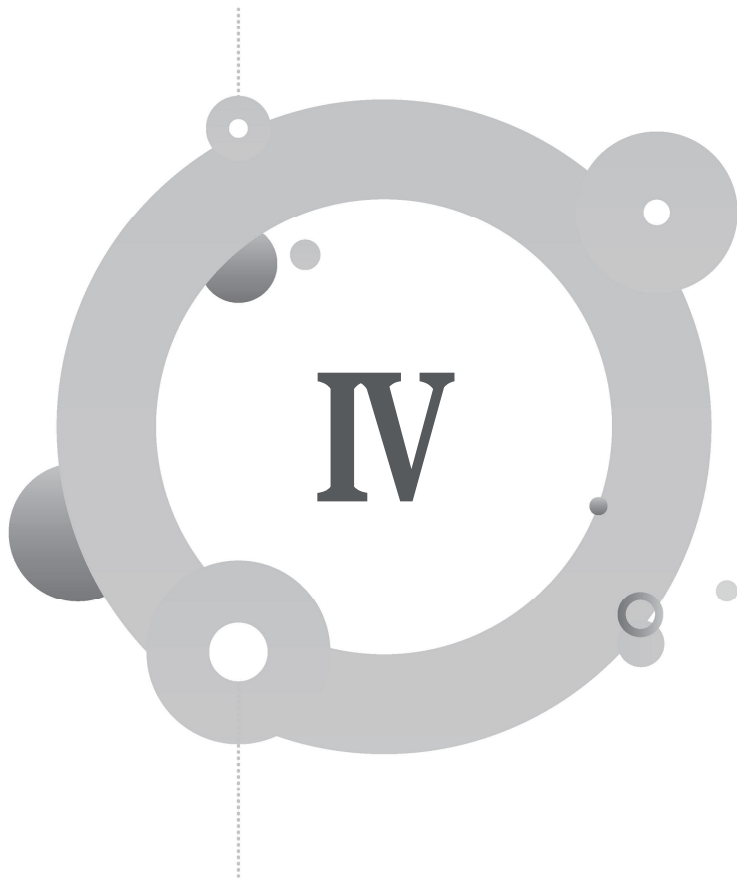
- 제출서류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제출 시 미적격 처리됩니다.
 - ※ 업무분장표, 기타 입증자료는 자격증 담당자가 요청 시, 추가 제출하도록 함.
-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서는 정신건강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부서, 주요업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경력 인정기간 산정을 위해 근무시간과 휴직기간(휴직사유)도 기재하여 제출
 - 휴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휴직기간 없음 기재
- 제출서류를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수행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거나, 잘못 기재 또는 제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요구자료 발생 시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문자(SMS) 안내하며, 연락처 오류 기재 및 발송문자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필요시 전화를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본인, 경력 사실 확인자(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 또는 업무 수행 부서의 장), 기관장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삭제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경력 산정 심사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1. 법적 근거
 2. 보수교육 대상자
 3.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4.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 제출
 5. 보수교육 운영 및 실시
-

1

법적 근거

가 |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8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제13조

제10조(보수교육 내용) 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과정: 4시간

- 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 나. 정신질환자들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2. 개별과정: 8시간

-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 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 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제11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제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제13조(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가 |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나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

- 면제 대상자

면제 대상자	증명 서류
1. 해당 연도 신규 자격증 취득자 (승급 제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2.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한 학기 이상) 당해연도 재학증명서와 등록금납입증명서
3. 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면제 확인은 해당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면제 신청
※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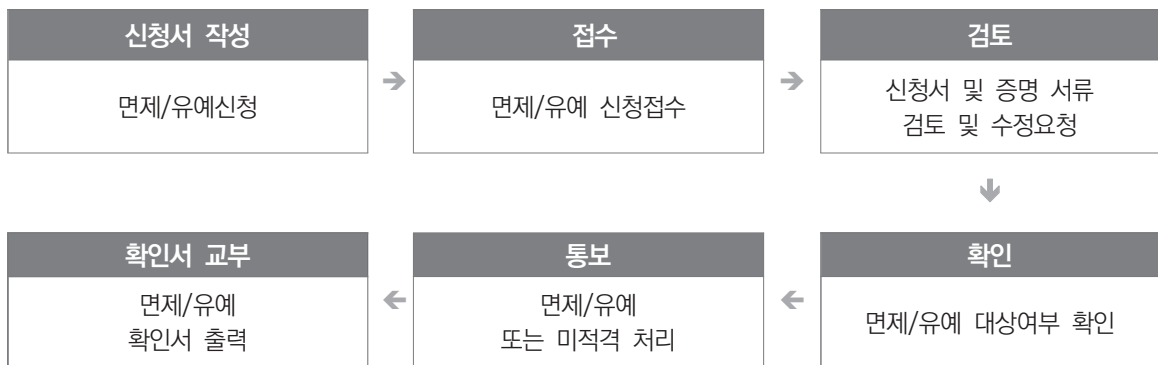
- 유예 대상자

유예 대상자	증명서류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진단서 또는 기관 내부 증명서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고용 24) 발급) 중 1부(기관 직인 필수), 병역확인서류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전역예정확인증명서) 등(휴직사유와 기간 명시)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해당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유예 신청
※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

다 |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 신청자 : 해당연도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
- 제출서류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 신청방법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처리절차



3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가 |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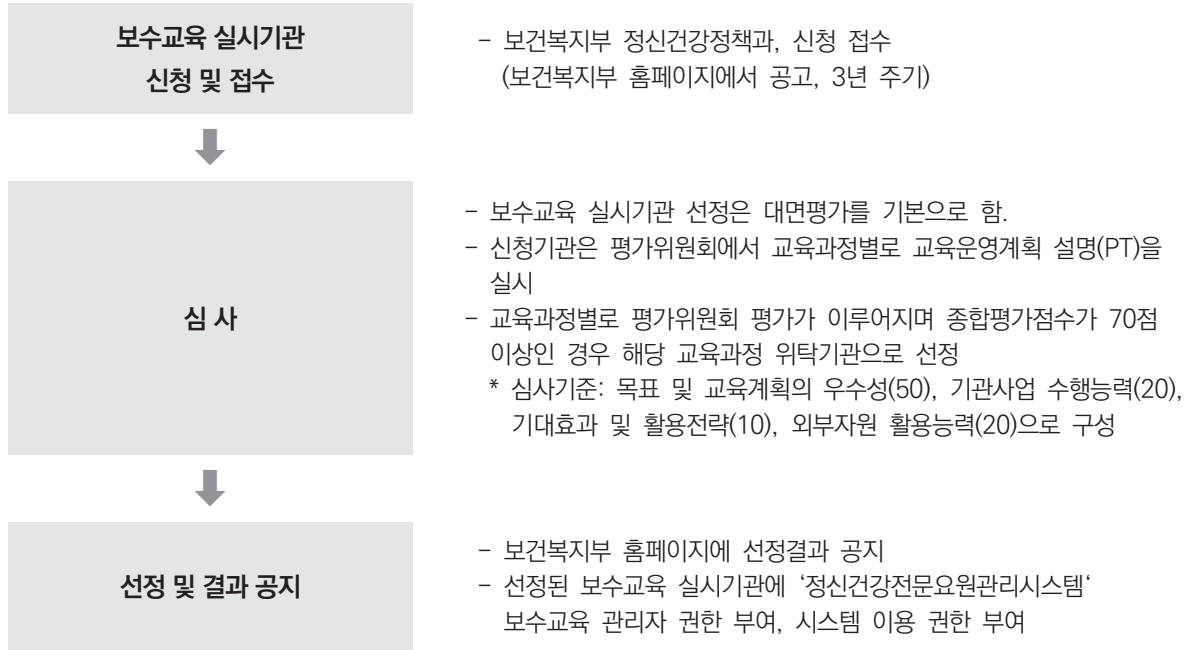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절차

-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공모
- 교육과정별(공통, 개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수교육 실시기관 선정결과 공지

Ⅰ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절차 Ⅰ



다 | 보수교육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위탁기관 선정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보수교육기관	지역	공통과정운영	개별과정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	○
국립나주병원	전라남도	○	○
국립부곡병원	경상남도	○	○
국립춘천병원	강원도	○	○
국립공주병원	충청남도	○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		○
한국임상심리학회	서울특별시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서울특별시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서울특별시		○

- 2026년도 위탁기관은 보건복지부 공모 후 확정될 예정(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고)

- 위탁기간 : 위탁기관 선정된 후 3년

4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 제출

가 | 보수교육 연간 계획보고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자금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 제4항)
- 연간계획 및 자금운영계획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

나 | 보수교육 신청일정 등록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보수교육 운영 계획과 안내공문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보수교육 신청일정에 등록

다 | 교육 일정 변경 및 폐강

- 보수교육 신청일정에 등록 및 안내된 교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정신건강 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등록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폐강하게 될 경우 5일 전까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및 해당교육 신청 일정에 폐강사유를 공지하여야 함.

라 | 교육 결과 제출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사업집행현황, 자금집행명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행령 제13조제4항)
-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출석부, 이수자 명단, 교육 자료, 평가서 등을 정신건강 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5

보수교육 운영 및 실시

가 | 보수교육 방법 및 비용

-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시간 당 8천원 이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위탁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9호)
※ 2026년도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음

나 | 보수교육 운영 기간 및 인정시간

- 당해 연도 내에 교육을 실시·종결하여야 함.
- 이수시간 1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
* 총 이수시간 8시간 기준: 교육시간 400분 + 휴식 80분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강사의 보수교육 인정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강사로 초빙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당회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시 본인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이수시간 인정

다 | 보수교육 신청 및 영수증

- 교육신청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 일정]을 통해 신청
- 교육신청 확인은 [보수교육 > 나의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
- 교육비 영수증 출력
 - 보수교육비 결제 시, 결제 창 하단에 입력한 이메일로 영수증 발송

- 이메일로 영수증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 나의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내역]을 통해 결제 홈페이지(KG이니시스)에 접속하여 영수증 조회 및 출력 가능
- * KG이니시스(<http://www.inicis.com/payment-view>) 결제내역조회 >> 조회하기 >> 개인정보 입력 >> 영수증 출력 가능
-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문의

라 | 교육취소 환불규정

○ 교육취소 시점별 환불

집합·비대면실시간 교육	동영상 교육	환불금액	비고
교육일로부터 5일 전까지	교육종료 전일까지 (진도율 0%인 경우)	교육비 전액	교육 미이수
교육일 4일 전~2일 전까지	-	교육비의 50%	
교육일 전일~교육 당일까지	교육영상 시청 시작 시 (진도율 1% 이상인 경우)	환불 불가	

* 교육취소 및 환불 신청은 교육생이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환불 기준(증빙자료 제출 필수)

- * 교육일 전일~교육 당일에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적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제3급 감염병으로 진단받았거나 감염 여부 검사 시
-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이유로 인해 교육 참석 불가 시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의한 경조사 시

집합·비대면실시간 교육	동영상 교육	환불금액	비고
교육 이수시간이 50% 미만일 경우	-	교육비 전액	교육 미이수
교육 이수시간이 50% 이상일 경우	-	환불 불가	교육 이수 인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환불여부를 결정

마 | 보수교육 출결확인

○ 공통과정 기준 2회, 개별과정 기준 3회 보수교육 출결을 확인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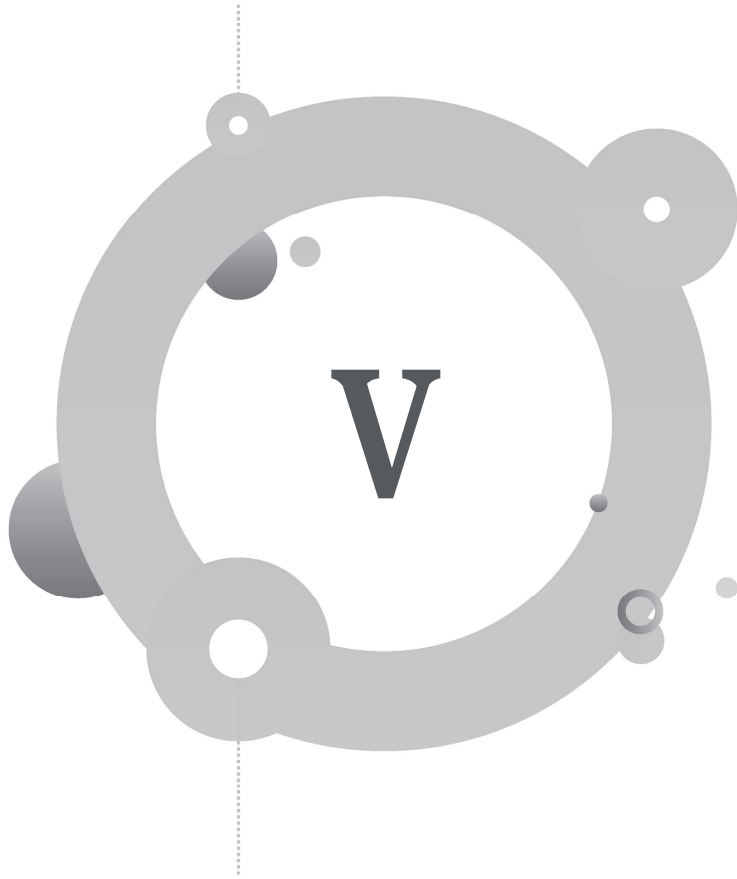
* 온라인(동영상) 교육은 진도율, 완료과정 수 등을 통해 출결확인

바 | 이수내역 확인 및 관리

-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교육 결과를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교육생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보수교육 > 나의 보수교육 > 보수교육이수내역] 페이지에서 이수내역 확인 가능
 - 보수교육 이수내역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문의
- 대면(집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교육일 기준 2주 이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동영상 교육은 진도율 100%, 설문응답, 수료 확인 기준 다음날 발급(출력) 가능
- 보수교육 이수증은 교육 실시기관에서 발급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보수교육 > 나의 보수교육 > 보수교육 이수내역 > 출력]에서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

사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확인 방법

구분	확인 경로
교육 신청	보수교육 신청일정>교육 선택>결제
교육 신청내역 확인	나의 보수교육>보수교육 신청내역
무통장입금 계좌 확인	나의 보수교육>보수교육 신청내역>교육 선택>화면 하단, 가상계좌(은행) 확인
영수증 재발급	나의 보수교육>보수교육 신청내역>영수증 출력
동영상교육 이수	나의 보수교육>보수교육 신청내역>온라인(동영상)강의실
동영상교육 이수확인	나의 보수교육>보수교육 신청내역>온라인(동영상)강의실>교육선택>화면 하단, (1) 완료과정수 충족 (2) 진도율 100% (3) 설문응답 확인
이수증 발급	나의 보수교육>보수교육 이수내역>출력 * (비대면실시간, 대면교육) 교육일 기준 2주 소요 * (동영상교육) 교육 이수 조건 충족 시, '다음 날'부터 출력 가능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관련 법률
 3.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관련 고시
-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 근거법령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8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나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1.] [법률 제 20820호, 2025.3.18. 일부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아니 되며,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적절한 운영을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자격증 교부에 대한 업무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등 진단 및 입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정한다)를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566호, 2022.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가. 시설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설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제9조(보수교육)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 이 상시 근무할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방법·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시설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보수교육 유예: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종류 등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1.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작업치료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3.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급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종류 등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간호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비고: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1. 공통 업무

-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사.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 나. 정신건강간호사
 - 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 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구분 \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 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이 론	개인심리치료 I	30	개인심리치료 II	30	집단치료 II	20
		심리평가 I	30	심리평가 II	30	임상심리연구방법	20
		정신사회재활이론	30	정신사회재활실제	30	가족치료	15
		면담기법	20	집단치료 I	30	소아청소년심리장애	15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30	신경심리평가	20	노년기심리장애	15
		정신약물학	10	지역사회심리학	10	심리학적자문	15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실 습	심리평가	330	심리/신경심리평가	280	심리평가	250
		개인/집단심리치료	150	개인/집단심리치료	200	개인/집단심리치료	280
		정신사회재활	150	정신사회재활	150	정신사회재활	150
		개별사례분석	200	개별사례분석	200	개별사례분석	200
	학술활동		20		20		20
2급		합 계	1,000				
		소 계	150				
	이 론	개인심리치료 I	30				
		심리평가 I	30				
		정신사회재활이론	30				
		면담기법	20				
		정신병리학(이상심리학)	30				
		정신약물학	10				
		소 계	830				
	실 습	심리평가	330				
		개인/집단심리치료	150				
		정신사회재활	150				
		개별사례분석	200				
	학술활동		20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2. 정신건강간호사

구분 \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 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이 론	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30 60 26 25 9	건강사정및진단(Ⅱ)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Ⅱ) 정신건강행정 및 정책 사례관리(Ⅰ)(재택중심)	50 60 10 30	건강사정및진단(Ⅲ)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Ⅲ) 사례관리(Ⅱ) (기관중심)	30 30 40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실 습	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150 360 240 40 40	건강사정및진단(Ⅱ)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Ⅱ) 사례관리(Ⅰ)(재택중심)	150 530 150	건강사정및진단(Ⅲ)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Ⅲ) 사례관리(Ⅱ) (기관중심)	150 500 230
	학술활동		20		20		20
2급		합 계	1,000				
		소 계	150				
	이 론	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30 60 26 25 9				
		소 계	830				
	실 습	건강사정및진단(Ⅰ)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지역사회정신간호 간호연구	150 360 240 40 40				
	학술활동		20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구분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이론	정신건강기초	35	정신건강기초	20	정신건강기초	16
			사정 및 평가	20	사정 및 평가	40	사정 및 평가	36
			정신의학	25	정신의학	25	정신의학	6
			사회사업치료	20	사회사업치료	50	사회사업치료	36
			정신건강문제	10	정신건강문제	15	정신건강문제	6
			사회복지서비스	40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실습	사회사업 사정	250	사회사업 사정	250	사회사업 사정	250
			사회사업치료 I	100	사회사업치료 I	100	사회사업치료 I	100
			사회사업치료 II	230	사회사업치료 II	230	사회사업치료 II	260
			사회사업치료 III	250	사회사업치료 III	250	사회사업치료 III	270
		학술활동		20		20		20
2급			합 계	1,000				
			소 계	150				
		이론	정신건강기초	35				
			사정 및 평가	20				
			정신의학	25				
			사업사업치료	20				
			정신건강문제	10				
			사회복지서비스	40				
			소 계	830				
		실습	사업사업 사정	250				
			사회사업치료 I	100				
			사회사업치료 II	230				
			사회사업치료 III	250				
		학술활동		20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4.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구분 \ 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급수	구 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1급		합 계	1,000	합 계	1,000	합 계	1,000
		소 계	150	소 계	150	소 계	100
	이 론	정신건강기초	3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Ⅱ	30	정신건강작업치료	30
		정신건강작업치료평가Ⅰ	20	정신건강작업치료	60	평가Ⅲ	
		정신건강작업치료	50	중재 및 치료Ⅱ		정신건강작업치료	60
		중재 및 치료Ⅰ		생애주기	40	중재 및 치료Ⅲ	
		생애주기 정신건강	3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생애주기	40
		작업치료Ⅰ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2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20			정신건강작업치료연구	20
		소 계	830	소 계	830	소 계	880
	실 습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작업치료Ⅰ	100	정신건강작업치료Ⅰ	100	정신건강작업치료Ⅰ	10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23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23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26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70
	학술활동		20		20		20
2급		합 계	1,000				
		소 계	150				
	이 론	정신건강기초	30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0				
		정신건강작업치료	50				
		중재 및 치료					
		생애주기 정신건강	30				
		작업치료					
		정신건강작업치료 연구	20				
		소 계	830				
	실 습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250				
		정신건강작업치료Ⅰ	100				
		정신건강작업치료Ⅱ	230				
		정신건강작업치료Ⅲ	250				
	학술활동		20				

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라목3)의 경우에는 6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1) 가중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해당 자격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자격을 받은 후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제7항 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제7항 제2호	자격취소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7조제7항 제3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제7항 제4호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사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분야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신청등급	☐ 1급 ☐ 2급			
학력	최종출신학교			
	전공과목	학위		
보유자격 및 면허	종류	등급		
	번호	취득 연월일		
수련기간			수련수로 연월일	
수련기관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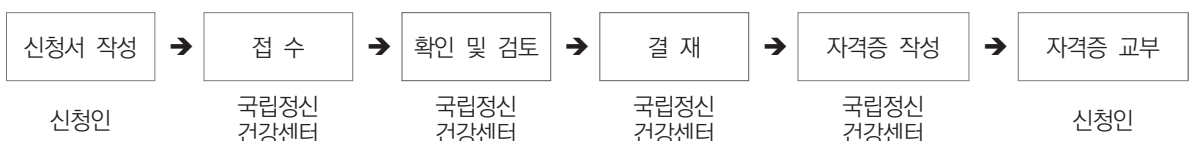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종별 및 등급 :

근 거 :

사진
(3.5cm×4.5cm)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백상지(150g/㎡)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격등록대장

				작성		담당	
자격번호			자격취득 연월일			사진 (3.5cm×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자격근거	최종학력	년 월 일 대학(대학원) 졸업					
	학 위						
	수 련(임상 실습)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수 련(임상 실습) 기 관						
관련 면허 (자격)	종별	번호	취득 연월일	합격 연월일		합격번호	
보수 교육	연도	공동보수교육 (이수시간)		지역별 개별보수교육 (이수시간)		비고(면제등)	

210mm×297mm[백상지 80g/㎡]

I.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의 이해

II.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III.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IV.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과정

V.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기구 및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	종류	등급		
	번호	취득 연월일		
신청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3.5cm×4.5cm) 1장	수수료 없음
------	--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행 2025. 1.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8호, 2024. 11. 26., 일부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의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증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신청기관에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위촉증명 서류 및 그 자의 자격증 사본

제3조(수련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명, 수련 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과목)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임상심리 관련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원 임상심리관련 과목
 - 가. 필수과목 (4과목): 정신병리학(혹은 고급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검사), 심리치료(혹은 고급상담이론), 연구방법론(혹은 고급심리통계, 고급심리설계)
 - 나. 선택과목(25과목 중 3과목): 인지치료, 행동치료, 정신분석치료, 집단치료, 아동심리치료, 노인심리치

료, 예술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게슈탈트치료(이상 상담 및 치료과목 중 택 1), (임상)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투사검사, 고급측정이론, 다변량 분석(이상 평가 및 측정과목 중 택1), 재활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인지과학,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생리심리학, 고급학습심리학, 고급인지심리학, 고급성격심리학(이상 기초 및 응용 과목 중 택1)

2. 대학 임상심리 관련과목

가. 필수과목(4과목):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평가(또는 심리검사, 심리진단), 연구방법론(또는 심리통계, 심리설계)

나. 선택과목(29과목 중 6과목): 상담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아동상담, 특수아상담, 신경심리평가, 아동심리평가, 심리측정 이론(이상 상담 및 치료/평가 및 측정 과목 중 택 1),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또는 생물심리학), 신경심리학, 실험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언어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지각심리학, 동기 및 정서 심리학(이상 기초과목 중 택 3), 건강심리학, 성심리학, 법정심리학, 행동의학,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와 적응, 노인심리학, 청년심리학(이상 응용과목 중 택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된 인정과목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수련기관별 실습시간)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②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명 이상 상근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습을 하는 수련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2.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

제6조(수련생모집) ①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수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 운영계획을 수련개시일 30일 전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 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되,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 내에서 30% 이상을 출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련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교육) 수련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위탁받아 수련하는 경우 허가된 수련 정원 외에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다. 단, 별도정원은 허가정원의 백분의 삼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수교육 내용) 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과정: 4시간
 - 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 나. 정신질환자들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
2. 개별과정: 8시간
 -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 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 라. 정신건강 작업치료 관련 교육

제11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 또는 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4-238호, 2024.11.26.〉

이 고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명		
소재지	(전화:)	
기관종류	☐ 국·공립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 ☐ 정신의료기관 ☐ 정신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예방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설과정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개설등급	☐ 1급 과정 ☐ 2급 과정	
지도전문요원	※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자: 명, 2급 자격자: 명) ※ 신청기관에 위촉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자: 명, 2급 자격자: 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포함)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신청기관의 지도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지정서
기관명 : 소재지 : 기관장 : 과정명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정조건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 수련기관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수련기관 수련과정, 정원 등은 수련기관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변경사항 기재란			
년 월 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명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련생 명부를 제출합니다.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련기관명 : (직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수련 등급 (년차)	성명	생년월일	졸업학교명	자격(면허) 종류	사진부착란 (가로 3.5cm, 세로 4.5cm)	비고
			학과(학위)	자격(면허) 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_____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료예정자 명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료예정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 수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련기관명 : (직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수련 등급 (년차)	성 명	생년월일	이론교육 이수시간	실습교육 이수시간	교환(파견) 수련 이수시간	교환(파견) 수련기관명	학술활동 이수시간	학습평가 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과 정 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제(1, 2)급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련기관명

수련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등급	자격증 번호	
	급	제	- 호
	소속기관		
기관 주소			

신청 사유	면제·유예 신청 대상연도
	〈면제 신청사유〉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2.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3. 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유예 신청사유〉 []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
교육 면제[] 유예[]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의
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립정신건강센터

→

검토

국립정신건강센터

→

결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확인서

성명 :

자격번호 :

직 종 :

보수교육 면제[] 유예[] 내역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귀하는 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이
호
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이수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종별 및 등급 :

교 육 과 정 : 공통과정 4시간 (), 개별과정 8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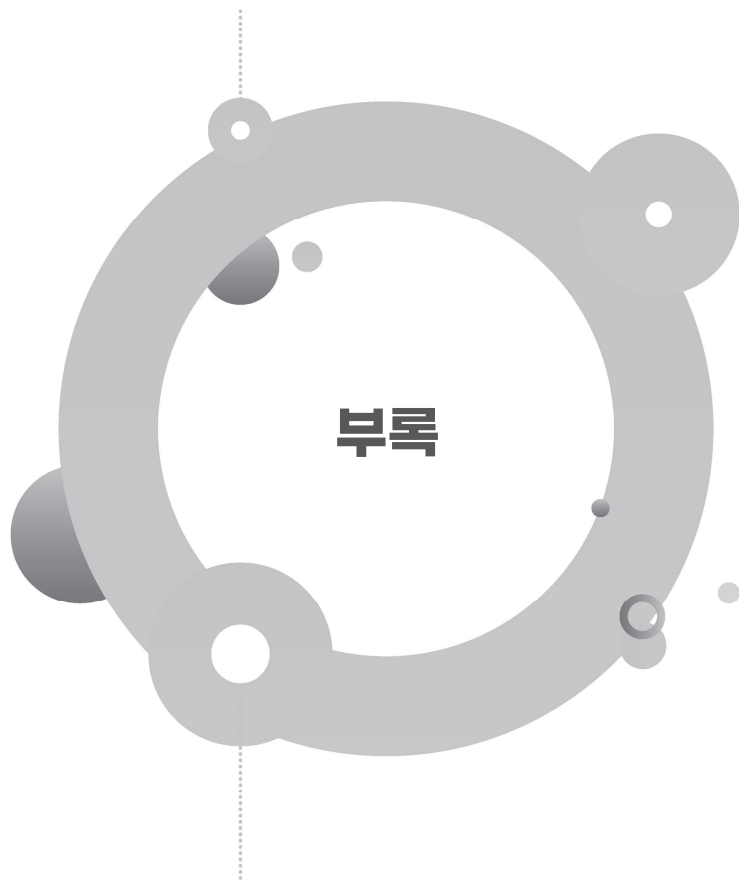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목록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목록

(2026.1.기준)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1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2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3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4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5	강북삼성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6	강서구 한마음세상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7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8	건국대학교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9	경희의료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5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10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15
11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12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3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7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60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3
14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15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6	나눔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5
17	누리봄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8	다함정신건강상담센터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19	대길 푸른초장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0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1	동작아이존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22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3	멋진월요일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24	멘토스병원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5	베이직병원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6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5
27	삼성서울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8	새오름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9	서대문해벗누리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30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31	서울명병원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32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3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34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4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35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36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37	서초열린세상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38	성모 다움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39	소망나무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40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41	송파미소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42	송파어우러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43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44	아산재단서울아산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45	아이코리아 송파아이존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46	양천아이존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47	에버그린하우스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48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49	연세의료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9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16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50	영등포아이존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5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서울	정신건강간호사 2급	4
52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53	중구아이존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54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55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56	중앙대학교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57	지혜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58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59	태화샘솟는집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60	태화해뜨는샘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61	평화정신재활시설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62	푸른존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63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64	한마음의 집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65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19
66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서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5
67	행복정신건강센터	서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68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69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70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71	다움병원(구. 동래병원)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72	대연성모병원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73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74	마음향기병원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75	벵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76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정신건강간호사 2급	17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77	부산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78	부산소테리아하우스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79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80	사직클럽하우스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81	상록병원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82	성은의료재단 연산병원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6
83	송국클럽하우스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84	아미정신건강센터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85	아하브병원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86	온종합병원	부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87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88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89	컴넷하우스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90	하모니하우스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91	한미레사회복지센터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92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93	해운대자명병원	부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9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95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정신건강간호사 2급	18
96	곽호순병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97	달구벌정신건강센터	대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98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99	달성정신재활센터 해피하우스	대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01	대구광역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102	대구정신장애인 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대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03	대동병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04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105	배성병원	대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06	베네스트 비콘	대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107	서대구대동병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08	성동병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109	영남대학교 의료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10	위드병원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11	정신가족협회 대구재활센터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4
112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13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114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	대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115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1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17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간호사 2급	3
118	글로리병원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19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20	더블유진병원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21	성로요양병원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22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정신건강간호사 2급	3
123	은혜병원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6
124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5
125	의료법인삼정의료재단 삼정병원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26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27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28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29	인천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30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31	인천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32	인천새희망병원	인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133	인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정신건강간호사 2급	1
134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정신건강간호사 2급	12
135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36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인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37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5
			정신건강간호사 2급	15
138	광주정신재활센터	광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139	광주제일병원	광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40	다사랑병원	광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141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42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143	천주의성요한병원	광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6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4
144	청심병원	광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45	해피뷰병원	광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146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47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48	대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49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50	대전한일병원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51	생명의 터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52	신생병원(휴원중)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53	소망의집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54	을지대학교병원	대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55	정신재활시설 한울타리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56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정신건강간호사 2급	2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57	햇살한줄	대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58	고담의료재단 마더스병원	울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159	울산광역시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울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60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161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62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63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164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정신건강간호사 2급	2
165	경기도지역사회전환시설 라온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66	계요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정신건강간호사 2급	5
167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68	고운누리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69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70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171	국군수도병원	경기	정신건강간호사 2급	8
17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173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74	나무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75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76	늘푸름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77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78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79	동원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80	루카스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81	마음샘정신재활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182	메타메디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83	바람숲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84	백암정신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8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186	분당제생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187	사랑밭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188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	정신건강간호사 2급	5
189	새샘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90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191	성남사랑의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192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93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194	수원시성인정신건강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95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96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197	승민의료재단 화성초록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198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199	아름다운세상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00	아주다남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01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202	아주편한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03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04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05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06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07	연세하늘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08	예담의료재단 이천소망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09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210	우리마을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11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 용인정신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6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212	의정부힐링스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13	이음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14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15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216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217	축령복음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18	카프이온센터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219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20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21	하나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22	한국중독연구재단 카프성모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223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224	한서중앙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25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경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226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27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28	화정병원	경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29	강릉동인병원	강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30	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31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232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33	국립춘천병원	강원	정신건강간호사 2급	1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1
234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35	봄내병원	강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236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37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238	우리내꿈터	강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39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강원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240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충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241	디딤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42	예사랑병원	충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243	우리들정신건강센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44	음성소망병원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245	주사랑병원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46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47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48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49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50	청주정신건강센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51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252	충북병원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253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54	충주어울림센터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55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56	해피하우스다솜	충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57	국립공주병원	충남	정신건강간호사 2급	18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258	국립법무병원	충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2
259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충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
260	마음애병원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61	백제종합병원	충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4
262	서천사랑병원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63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264	신동환병원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65	아산병원(의료법인정빈의료재단)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66	열린성애병원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67	좋은이웃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68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69	천안중앙병원	충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70	충무사랑병원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71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72	함께하는 복지재단 성지하임병원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73	혜강병원	충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74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75	남원성일병원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76	동근마음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77	마음건강복지관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278	미래병원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79	서로돕는마을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80	성일유엔아이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81	신세계병원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82	예수병원	전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283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4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84	장수보건복지센터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85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86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간호사 2급	3
287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288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89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90	희망의 쉼터	전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291	국립나주병원	전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9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292	밝은마음병원	전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93	보은병원	전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94	빛고을의료재단 순천은병원	전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295	빛고을정신요양원	전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296	영광기독신하병원	전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5
297	영암병원	전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298	해남혜민병원	전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299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300	대구대학교정신건강상담센터	경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5
301	대성재활센터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302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303	마야병원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5
304	문경제일병원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305	브솔시냇가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306	새희망병원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307	소중한사람들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308	신애정신병원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순번	수련기관명	지역	과정 및 등급	정원
309	안동성소병원	경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310	인성병원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311	철곡시문병원	경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312	포항인성병원	경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313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314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
315	국립부곡병원	경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20
316	노아병원	경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4
317	양산병원	경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5
			정신건강간호사 2급	1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1
318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6
319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3
320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321	한사랑병원	경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322	길정신건강센터	제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1
323	연강병원	제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3
324	연강참병원	제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3
32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간호사 2급	6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
326	제주한라병원	제주	정신건강간호사 2급	9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2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주 소	(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홈페이지	http://www.ncmh.go.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비매품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